

2012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3.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위원회의 구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6. 일반증인 출석 현황	8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
가. 시정·처리 요구현황	14
1) 환경부 소관	14
2) 고용노동부 소관	25
3) 기상청 소관	35
4) 서울특별시 소관	37
나. 대상기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9
1) 환경부 소관	39
2) 고용노동부 소관	107
3) 기상청 소관	163
4) 서울특별시 소관	177
8. 감사원 감사요구사항	187
9. 증인고발 사항	187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12. 10. 5(금) ~ 10. 24(수)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p>1. 환 경 부</p> <p>가. 본 부</p> <p>나. 소속기관</p> <p>(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p> <p>(2) 국립환경과학원</p> <p>(3) 국립생물자원관</p> <p>(4) 국립환경인력개발원</p> <p>(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p> <p>(6) 한강유역환경청</p> <p>(7) 낙동강유역환경청</p> <p>(8) 금강유역환경청</p> <p>(9) 영산강유역환경청</p> <p>(10) 수도권대기환경청</p> <p>(11) 원주지방환경청</p> <p>(12) 대구지방환경청</p> <p>(13) 새만금지방환경청</p> <p>다. 산하 공공기관</p> <p>(1) 한국환경공단</p> <p>(2) 국립공원관리공단</p> <p>(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p> <p>(4)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3. 고용노동부</p> <p>가. 본 부</p> <p>나. 소속기관</p> <p>(1) 중앙노동위원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p> <p>(2) 최저임금위원회</p> <p>(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p> <p>(4) 고용보험심사위원회</p> <p>(5) 서울지방고용노동청</p> <p>(6) 중부지방고용노동청</p> <p>(7) 부산지방고용노동청</p> <p>(8) 대구지방고용노동청</p> <p>(9) 광주지방고용노동청</p> <p>(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p> <p>다. 산하 공공기관</p> <p>(1) 근로복지공단</p> <p>(2) 한국산업인력공단</p>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p>2. 기상청</p> <p>가. 본 부</p> <p>나. 소속기관</p> <p>(1) 국립기상연구소</p> <p>(2) 부산지방기상청</p> <p>(3) 광주지방기상청</p> <p>(4) 대전지방기상청</p> <p>(5) 강원지방기상청</p> <p>(6) 제주지방기상청</p> <p>(7) 국가기상위성센터</p> <p>(8) 기상레이더센터</p> <p>(9) 항공기상청</p> <p>나. 산하 법정기관</p> <p>(1) 한국기상산업진흥원</p>	<p>(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p> <p>(4) 한국장애인고용공단</p> <p>(5) 한국고용정보원</p> <p>(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p> <p>(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p> <p>(8) 한국기술교육대학교</p> <p>(9) 노사발전재단</p> <p>(1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p> <p>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p> <p>5. 서울특별시</p>
---	--

4. 감사위원회의 구성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위원장	신계륜 위원장	(민주통합당)
감사위원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	김상민 "	"
"	서용교 "	"
"	이완영 "	"
"	이종훈 "	"
"	주영순 "	"
"	최봉홍 "	"
"	홍영표 위원	(민주통합당)
"	김경협 "	"
"	은수미 "	"
"	장하나 "	"
"	한명숙 "	"
"	한정애 "	"
"	심상정 위원	(비교섭단체)

나. 사무보조자 : 천 병 호 (수석전문위원)
 이 동 근 (전문위원)
 윤 광 식 (입법조사관)
 이 옥 순 (")
 이 형 진 (")
 김 정 규 (")
 김 성 수 (")
 정 원 철 (")
 김 진 선 (")
 최 성 민 (")
 박 양 속 (")
 한 상 춘 (입법조사관보)
 김 태 경 (")
 홍 영 희 (사 무 원)
 임 현 속 (")
 강 량 인 (")

다. 속 기 사 김미라, 한연미, 최혜연,
 정 속, 이윤정, 손선락 속기주무관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황 우 진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새누리당
조 용 철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변 제 준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김 영 선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민주통합당
김 수 형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

마. 감사위원 보좌진

이 준	보좌관	(신계륜 위원장실)
이영주	비서관	(김성태 위원실)
서일교	비서관	(김상민 위원실)
우기송	비서관	(서용교 위원실)
신승준	보좌관	(이완영 위원실)
권재필	보좌관	(이종훈 위원실)
양성준	보좌관	(주영순 위원실)
백은상	보좌관	(최봉홍 위원실)
정한모	보좌관	(홍영표 위원실)
이재용	보좌관	(김경협 위원실)
김은정	보좌관	(은수미 위원실)
송용한	보좌관	(장하나 위원실)
김영철	보좌관	(한명숙 위원실)
조선옥	보좌관	(한정애 위원실)
김가람	비서관	(심상정 위원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5일 (금)	10:00	환 경 부	환경부	
10월 6일(토) ~ 10월 7일(일)		공 휴 일		
10월 8일 (월)	10: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0월 9일 (화)	10:00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 (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국 회	
10월 10일 (수)		자 료 정 리		
10월 11일 (목)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충부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 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배석
10월 12일 (금)	10:00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 회	
10월 13일(토) ~ 10월 14일(일)		공 휴 일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15일 (월)	10: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현장시찰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경남 사천) 현장]
10월 16일 (화)	10:00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10월 17일 (수)		현장시찰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경남 사천) 현장]		
10월 18일 (목)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국 회	
10월 19일 (금)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현장시찰 (매립지 골프장 현장, RDF시설, 아라뱃길)
10월 20일(토) ~ 10월 21일(일)		공 휴 일		
10월 22일 (월)	10:00	고용노동부	국 회	
10월 23일 (화)	1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0월 24일 (수)	10:00	환 경 부	국 회	

6. 일반증인 출석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8	29	37
출 석	6	24	30
불 출 석	2	5	7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40	13	53
출 석	32	13	45
불 출 석	8	-	8

2012년도 국정감사 환경분야 증인 · 참고인

대상기관	구 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10.5(금) 환경부	참고인	황순진	건국대 환경과학과 교수	4대강 사업관련	○
	참고인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4대강 사업관련	○
	참고인	김좌관	부산 카톨릭대 교수	4대강 사업관련	○
	참고인	류한국	대구지하철공사	지하철 및 지하도 공기오염	○
	참고인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 및 지하도 공기오염 관련	○
	참고인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및 지하도 공기오염 관련	○
	참고인	석치순	서울도시철도 기술본부장	지하철 및 지하도 공기오염 관련	○
	참고인	공선용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	지하철 및 지하도 공기오염 관련	○
	참고인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지하철 및 지하도 공기오염 관련	○
	참고인	정동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수질악화 관련	○
	참고인	김범철	하천호소학회장	수질악화 관련	○
참고인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화학물 폐기물 처리방법 관련	×	
10.9(화) 기상청	증인	탁승주	웨더링크 대표이사	라이다 도입 관련	○
	증인	김병선	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라이다 도입 관련	×
	증인	허 은	전 항공기상청장	라이다 도입 관련	○
	증인	김동식	케이웨더(주) 사장	기상산업진흥원 라이다 장비입찰 비리 관련	×
	증인	박진석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구매담당팀장	기상산업진흥원 라이다 장비입찰 비리 관련	○
10.12(금) 한강유역 환경청 등	참고인	반경순	강원도 골프장 범도민대책위원장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
	참고인	송홍선	공주대 교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
	참고인	한광용	나를 만나는 숲(사단법인) 연구담당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
	참고인	구윤서	안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
	참고인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
	참고인	장인수	(주)자연환경복원연구원장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

대상기관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10.16(화) 낙동강유역 환경청 등	참고인	박희천	경북대 생물학과 교수	4대강 생태계 관련	○
	참고인	손명원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	4대강 생태계 관련	○
	참고인	이순화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4대강 생태계 관련	○
	참고인	신재기	한국수자원공사수석연구원	4대강 생태계 관련	○
	참고인	김맹기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장	4대강 생태계 관련	○
	참고인	이준경	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	4대강 생태계 관련	×
	참고인	김경철	습지와새들의 친구 사무국장	4대강 생태계 관련	×
10.19(금)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등	증인	백우석	OCI대표이사	공장부지내 유류 누출 관련	○
	참고인	나주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장	수도권매립지골프장: 드림파크골프장 관련	○
	참고인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캠프캐롤 관련	○
10.24(수) 환경부 (종합감사)	증인	이창기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시멘트공장 환경피해 관련	○
	증인	고규환	아세아시멘트 대표이사	시멘트공장 환경피해 관련	○
	참고인	박광호	시멘트산업공해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멘트공장 환경피해 관련	○
	참고인	곽창록	시멘트산업공해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멘트공장 환경피해 관련	○
계	37인(증인 8인, 참고인 29인)				

2012년도 국정감사 고용노동분야 증인 · 참고인

대상기관	구 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10.8(월) 고용노동부	증인	김재철 MBC 사장	MBC 파업사태 전반 관련	×
	증인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MBC 파업사태 전반 관련	○
	증인	류정희 청와대 국장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김정환 경찰 정보과 경정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정병진 노동부 사무관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김병수 아산시경 정보과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이동용 경충 전무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강기봉 발레오만도 사장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황태식 발레오만도 전 인사담당 상무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조정훈 상신브레이크 노조원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양근재 상신브레이크 전무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김효일 상신브레이크 부회장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증인	이길구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노동조합 탄압 관련	○
	증인	박노준 한국동서발전(주) 토건부장	노동조합 탄압 관련	○
	증인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장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
	증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복수노조 관련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
	증인	심중두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	이대병원 파업, 부당노동행위 관련	○
	증인	최동우 현대자동차 이사	유성기업 노사분규 관련	○
	증인	황승필 현대자동차 차장	유성기업 노사분규 관련	○
	증인	박영태 쌍용자동차인력지원본부장 전무(전)	쌍용차 관련	○
	증인	과완고엔카 쌍용자동차 회장	쌍용차 관련	○
	증인	김주목 창조컨설팅 노무사	쌍용차 관련	○
	증인	고영중 교육과학기술부 영여교육 정책과장	영어회화전문강사 비정규직 관련	○

대상기관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참고인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노조탄압 관련	○
	참고인	정연재	발레오만도 노조원	노조탄압 및 용역폭력 관련	○
	참고인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노조탄압 관련	○
10.11(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참고인	한소영	아르바이트생	노동환경실태 관련	○
10.1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증인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한진중공업 청문회 약속 미이행 등	○
	증인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
	증인	오지환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
	증인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
	증인	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 치안감	대구시지노인병원장기과업관련(KEC과업관련)	○
	참고인	차해도	한진중공업 지회장	한진중공업 청문회 약속 미이행 등 관련	○
	참고인	김희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교섭거부 관련	○
10.18(목) 근로복지공단 등	증인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 직업병(백혈병) 문제 관련	○
	증인	박정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삼성전자 직업병(백혈병) 문제 관련	○
	증인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대한상의 인력개발단 사업 관련	○
	증인	박용용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단장	대한상의 인력개발단 사업 관련	○
	참고인	김대균	대한상공회의소 노조위원장	대한상의 인력개발단 사업 관련	○
	참고인	송창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퇴직자	삼성전자 직업병(백혈병) 문제 관련	○
	참고인	한혜경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무	삼성전자 직업병(백혈병) 문제 관련	○
10.22(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	김재철	MBC 사장	MBC 파업사태 전반 관련	×
	증인	이상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파업 관련	×
	증인	남궁정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전 대표이사(현 이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파업 관련	×
	증인	정연수	국민노총위원장	국민노총관련	×
	증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불법해고 및 노조탄압 관련	×
	증인	존와일리	ING생명보험 대표이사	ING생명보험 파업 관련	×
	증인	황정희	ING생명보험 인사총괄전무	ING생명보험 파업 관련	○

대상기관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증인	이기철	금융노조 ING생명보험지부 지부장	ING생명보험 파업 관련	○
	참고인	김호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지부 노조지부장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파업 관련	○
	참고인	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불법해고 관련	○
	참고인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실업 관련, 청년 고용촉진 관련	○
	참고인	김태룡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사업장 감독 관련	○
10.23(화) 서울시	증인	이종수	SH공사 이사장	SH공사 불법파견 관련	○
계	53인(증인 40인, 참고인 13인)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현황

1) 환경부 소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환경부 본부>

【공통사항】

- (1)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운영 필요
- (2) 환경감시업무 강화 필요
- (3)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 (4) 환경부 세입확보 방안 마련
- (5)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 필요
- (6) 현 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필요

【상하수도 부문】

- (1) 용산미군기지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 문제 및 대책
- (2) 농촌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필요
- (3)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재발방지 대책
- (4) 방사성물질 오염 지하수 식수 대체 방안
- (5) 클린주유소 시설 개선비 지원 필요
- (6) 4대강 사업 총인처리시설 담합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
- (7)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 허용 검토
- (8)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보급 확대 등
- (9) 상수도 종합관리 대책
- (10)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지자체 부담 경감 등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1)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12) 중수도 활성화 방안 마련
- (13)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평가 필요
- (14) 오산 미공군기지 불법 폐기물 관련 조치 필요
- (15) 산업단지 토양지하수오염 관련 대책 마련
- (16) 군부대 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염 조사 대책
- (17) 지하수 활용방안 마련 및 먹는물 경도 규제 완화 필요

【수질 부문】

- (1) 4대강 사업 관련 지적사항
- (2) 4대강 녹조발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3) 하천 독성물질 관리 대책
- (4) 4대강 공사 준설선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 (5) 4대강변 유희토지 활용 대책 마련
- (6) 수질악화 우려를 알고도 의도적 왜곡과 은폐 관련
- (7) 민관합동수질공동조사 실시 필요

【폐기물 부문】

- (1) 방사성 도로폐기물 도심 방치 신속 처리 필요
- (2)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3) 폐형광등 재활용업체의 수은폐기물 처리 관리·감독 강화
- (4) 폐젤리케이블 처리 관리·감독 강화
- (5) 수입폐기물로 만든 불량 PVC하수관 제재 방안 마련
-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개선 등
- (7) 폐의약품 회수·처리 대책 마련
- (8) 고�형연료화제도(SRF) 도입 관련
- (9) 폐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대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0) 폐타이어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
- (11) 재활용 가능한 폴리프로필렌(PP) 수직보호망 의무화 필요
- (12) 1회용 기저귀 재활용 방안 검토 필요
- (13) 쓰레기 소각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14) 폐기물 불법 매립 방지를 위하여 올바로시스템 개선 필요
- (15) 재활용 산업의 녹색일자리 정책 모색 필요
- (16) 군산 제2국가산단 폐기물매립장 동쪽사면 붕괴 관련 조치
- (17) 방사능 폐석고의 공정시설 운영 문제

【대기 부문】

-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확대 필요
- (2) 굴뚝자동측정기기 국산화율 제고 대책 필요
- (3) 해외에서 오는 환경오염 관련 대책 마련
- (4) CNG 이동충전소 설치비용 보전 관련 대책 마련
- (5)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 재검토 필요
- (6)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지침 변경 부적절

【자연 부문】

- (1) 강원도 구만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실 관련 대책 마련
-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미이행 문제
-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행 관리·감독 철저
- (4)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회복 필요
-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관련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 (6)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조정에 대한 심사 철저 필요
- (7) 사천 케이블카 시범사업 재심의 필요
- (8) 사육곰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9) 석탄재의 새만금산단 매립 수평배수층재 사용 문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0) 해상공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필요
- (11) 친수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 (12)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 필요
- (13) 영광 원전 온배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관련 조치 필요
- (14) 광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 필요
- (15) 대안없는 국립공원 지역 해제, 대책 마련 필요

【환경보호일반 부문】

- (1) 구미 불산사고 관련 지적사항
- (2) 학교 운동장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
- (3)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현장 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 (4) 환경청의 유해물질 취급업체 관리 및 사고 대비 부실
-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6) 라돈 알람기 보급 확대 필요
- (7)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기준 마련 필요
- (8) 전자파 관리방안 마련 필요
- (9) 대학 연구소 내 화학물질 관리 강화
- (10)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강화 필요
- (11) 환경 R&D 투자 확대 필요
- (12) 생활소음 줄이기 대책 실효성 제고
- (13) 터널 내 공기질 관련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설정
- (14)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
- (15) 나노물질 관련 관리제도 마련
- (16) 환경성 질환 저감 대책 필요
- (17)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개선
- (18) 환경산업 육성 초창기부터 지원 필요
- (19) 환경표지제도 민간부문으로 확대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20)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개선 방안 마련
- (21)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피해 보상대책 마련
- (22) 캠프캐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 (23) 국책사업의 사업단장의 정치적 활동 관련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 지적사항】

- (1)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 비정규직 개선방안 마련
- (2)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3)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명 제한 규정 마련
- (4) 한국환경공단 입찰비리 감사원 감사 요구 필요
- (5) 환경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대책 마련
- (6)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 (7) 일본 수입폐기물 관리 대책
- (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관리·감독 강화 필요
- (9) 부산 취수원의 수질개선 대책 마련

<지방청 공통사항>

【7개 지방청 공통사항】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관리·감독 필요
- (2) 화학물질 사고 대비 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
- (3) 전국 정수장 수질사고 위기대응체계 미흡
- (4)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후관리 부실

【4대강 유역환경청 공통사항】

- (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상의 문제
- (2) 보 설치로 인한 회유성 어류 감소 대책 마련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3) 4대강사업 후 생태계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한강유역환경청>

- (1) 물이용부담금 개선 필요
- (2) 서울시 공무원의 한강청 파견 관련
- (3) COD 중심 수질관리 필요
- (4) 즉각방류 등 조류대책 필요
- (5) 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및 증설 필요
- (6) 국제적 멸종위기종 철저 관리
- (7) 남양주시 하수 불법 방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8) 대체 습지조성 개선 필요
- (9) 한강 식수 대책 필요
- (10) 자병산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확보 필요
- (2) 녹조 발생 관련
- (3)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4) 총인처리시설의 운영미숙 대책 마련
- (5) 의료폐기물 지도 점검 철저
- (6) 토지매수사업 효율성 제고
- (7) 물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
- (8) 오염물질배출 시스템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9)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 증진
- (10) 유해화학 처리장비의 내구연한 적정화 및 자격 획득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11)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 필요
- (12) 양산어곡 골프장 건설 계획 협의 내용 공개
- (13) 어도 설치 시 생태적, 환경적 요인 고려 필요

<대구지방환경청>

- (1) 구미 불산 사고 대응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2) 대체 습지 조성에 철저한 사전 계획 필요
- (3) 대구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보건평가 실시 필요

<영산강유역환경청>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급증
- (2) 영광 원전 온배수저감시설 미설치에 대한 조치 필요
- (3)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설명회 무산 관련 재조사 필요
- (4) 도서 지역 관리 위해 영산강청 인력 및 예산 확대 필요
- (5) 광양항 항로 준설 사업 주민의견 수렴 필요
- (6) 영산강수계 토지매수 확대 필요
- (7) 국제적 멸종위기종 철저 관리
- (8) 목포 도심 침수 문제 해결 필요
- (9) 환경유지용수 확보 필요
- (10) 하수처리장 개선 대책 마련

<금강유역환경청>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급증
- (2) 4대강 사업구간의 어도와 대체습지 개선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3) 사육곰 관리대책 마련
- (4) 4대강 공사 준설선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 (5) 폐수처리시설 가동률 제고

<수도권대기환경청>

-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과다 설정
- (2)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마련 필요
- (3) 저공해차 의무구매 홍보·교육 강화 등
- (4) 친기업적 규제완화 관련
- (5) PM2.5 대책 마련 필요
- (6) 2차 특별대책 수립 관련
- (7) 대기 관련 규제 후퇴 관련

<원주지방환경청>

- (1) 골프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 관련
- (2) 동강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3) 대암산 습지 문제 해결 필요

<새만금지방환경청>

- (1) 폐기물매립지 침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대처
- (2) 새만금 수질오염 해소 위해 해수 유통 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분쟁조정의 재심제도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2) 방사능·전자파 등에 대한 분쟁 조정 필요
- (3) 불복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 저조 문제
-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역할 홍보 강화

<국립환경과학원>

- (1) 국립환경과학원 근무기강 확립 필요
- (2)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 (3) 연구역량 강화 관련
- (4)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정치활동 등 관련
- (5) 4대강 수질예측 관련
- (6) 라돈 실태조사 및 사후대책 관련
- (7) 캠프캐럴 오염사고 관련

<국립생물자원관>

- (1) 4대강 공사구간의 철새 감소
- (2)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자생생물 확보 대책
- (3) 해외생물자원 조사 관련
- (4) ABS 센터 홍보 및 활성화 필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2) 전담교수 도입 필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1)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제고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한국환경공단>

- (1) 라돈 저감대책 관련
- (2) 환경기초시설 공사 현장감독 인원 및 정규직 비율 확대 등
- (3) 한국환경공단 직원간 임금격차 해소
-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 (5) 굴뚝자동측정기 국산화율 제고 관련
- (6) 산업단지 토양오염 무방비·무대책
- (7) 입찰비리와 임직원 비리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

- (1)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작업 관련
- (2)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 개선 관련
- (3)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 (4)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및 성수기 주차난 대책
- (5)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출입 문제
- (6) 국립공원 등산로 산사태 위험지역 대책 마련
- (7) 국립공원 내 역사문화자원 체계적인 관리 필요
- (8) 산사태 예방시설물 설치 필요
- (9) 해상국립공원 업무 수행 위한 선박 필요
- (10) 공원 내 화장실, 청소년수련시설 등 설치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골프장 운영 관련
- (2)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활동 관련
- (3)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공사비 증액 부적절
- (4) 수도권매립지 상습 불법폐기물 반입회사 근절 대책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5)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 (6)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관련
- (2) 환경벤처센터 운영 관련
-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 (4) 기후변화대응 R&D 확대 필요
- (5) 환경산업융자 증액 필요
- (6) 환경표지인증제도 인증취소 관련

2) 고용노동부 소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고용노동부 본부 >

【공통사항】

- (1) 정책연구용역 관련 법령 준수 및 활용도 제고
- (2) 직원 근무기강 확립
- (3) 서훈 및 표창 수상자 선발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4) 부족한 인력의 적기 확충
- (5) 지방관서 관할구역 변경 재검토
- (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필요
- (7) 국회 요구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 필요

【고용 부문】

- (1) 공공기관부터 차별적 채용관행 개선에 솔선수범
-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위한 조치 마련
- (4)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대책 강구
-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구
- (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참여대상 확대방안 검토
- (7)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청년층 홍보 강화 필요
- (8)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
- (9)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유도 대책 마련
- (10)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보완

【노동 부문】

- (1) 과도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 점검 자제
- (2) 고용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여부 조사 및 처우개선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3)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4)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5)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활성화 및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6) (주)KT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 (7) 일부 부처 무기계약직 고용불안문제 시정 등
- (8)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
- (9) 콜센터 상담원 근무환경 점검 및 개선책 마련
- (10) 산재병원 공공성 강화 지원 개선
- (1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12) 산재보험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
- (13) 야간노동 관련 질환 직업병인정기준 마련
- (14) 중대산업사고 예방관리 대상을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15) 방사선 노출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 (16) 사내하도급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17)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 (18)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조항 재도입 검토
- (19)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실태 점검
- (20)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 (21)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 (22) 사용자의 노동조합 설립 개입에 대한 조사
- (23) 발전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24) 노무법인 감독 철저
- (25)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 (26) 언론사 파업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시
- (27) 직장폐쇄 남용방지 대책 마련
- (28)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의 적법 여부 검토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29)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 고용안정 대책 마련
- (30) 첨단산업단지 노동관계법 정착 위한 노력 필요
- (31) 근로기준법 실효성 강화
- (32) 임금체불 관련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강구
- (33) 포괄임금 남용 등의 문제 개선 위한 대책 마련
- (34) 정리해고 방지 및 해고자 지원대책 마련
- (3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실효성 제고
- (36) 근로자의 적극적 공민권행사 위한 조치 필요
- (37) 택시운송업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실태조사 필요
- (38) 울산항운노조 관련 갑근세 탈세 및 과다징수 의혹 조사
- (39) 한진중공업 노사합의 이행여부 지속적 점검
- (40)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구조 변경 검토
- (41) 위법한 정리해고 및 재고용 문제 개선 대책 마련
- (42) 감정노동 산재인정 대책 마련
- (43) 성희롱 산재인정 대책 마련
- (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대책 마련
- (45)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등
- (46) 국민노총 국비 지원 집행 결과 점검
- (47)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등
- (48) 민간근로자 처우 개선
- (49) 근로자과건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변경
- (50) 산재예방 정책의 지표 개선
- (51)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충원 실시
- (52) 기업의 무노조경영 정책 폐기 지도
- (53)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
- (54)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처벌
- (55)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현황’ 작성 사업 개선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56)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불법 조합비 징수여부 등 조사 필요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 지적사항】

- (1) 노사발전재단 기관 안정화
- (2) 한국잡월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 (3) 1차 산업 체험프로그램 검토 및 진로설계관 수용능력 확충
- (4)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채용 특혜의혹 재조사
- (5) 근로복지공단 비리 외부감사 등 감사강화
- (6) 화학물질 사용사업장 관리강화
- (7)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관리·감독 강화
- (8) 산업안전관련 법령 위반 처벌조치 강화
- (9) 산업재해통계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제도개선
- (10) 학교현장근로자 안전보건관리대책 강화
- (11)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기술직 비율 확대
- (12)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관리 강화
- (13) 구미 불산유출사고 예방관리책임 조치 철저
- (14) 산재심사에 법원판결 즉각 반영
- (15)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민간위탁 중단
- (16)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조치 철저
- (17)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재공공화 필요
- (18) 민간인 불법사찰과 노조파괴 연루 인사들의 공직 퇴출
- (19) 비정규직 근무경력 미 인정 사유 보고 및 개선대책 마련
- (20)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대책 실시 및 정규직 전환 계획 강구

<6개 지방청 공통사항>

- (1) 근로감독관 기강 확립 및 청렴한 노동행정 구축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1)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신속한 사건처리
- (2)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3)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4) 금융 관련 노동조합 파업 사태 해결
- (5)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 (6) 임금채불사건 지도해결 비율 제고
- (7) 채용박람회 내실화 방안 마련
- (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효과성 제고방안 강구
- (9) (주)대한항공 부당노동행위 조사
- (10) 재능교육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법 조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1) KT의 CP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사 실시
- (2)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신속한 사건처리
- (3) 채용박람회 내실화 대책 마련
- (4) 건설업종 재해자 감소 대책 마련
- (5) 외국인근로자 산재 감소 대책마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 (2)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한 대책 강구
- (3) 직업안정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 (4) 한진중공업 복직근로자 모니터링
- (5) 채용박람회 취업실적 제고방안 마련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6) 경기불황에 따른 정리해고 방지 위한 대책 마련
- (7) 임금채불사건 지도해결비율 제고방안 마련
- (8)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방안 강구
- (9)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연계 대책 시행
- (10) 산재은폐 조사 및 처벌 강화
- (11) 조선업체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
- (1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점검과 고용명령 시행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1) 불산유출 등 중대재해발생 대응조치 강화
-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 (3) 대구지하철 해고자 복직
- (4) 학교도서관 사서 고용안정 방안 마련
- (5)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 점검 적정화
- (6) 노동조합 탄압 행위 예방 철저
- (7) 영남대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 실시
- (8) 임금채불문제 개선 대책 마련
- (9) 채용박람회사업 성과 제고방안 강구
- (10) 국제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1) 일선 관서에 인력 재배치
- (2)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관리감독 강화
- (3) 자율 재해예방계획제출 사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 (4) 타지역보다 높은 산재율에 대한 대책 마련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 (2)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 (3)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사전 예방지도
-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효과성 제고방안 강구
- (5) 서산 아르바이트생 자살사건 관련 직장내 성희롱 방지 대책 마련
- (6) 방사능피폭근로자 안전대책 마련
- (7) 세종시 등 대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1)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2) 위원회 대리참석 문제 개선
- (3)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필요
- (4) 비정규직 문제 논의 필요
- (5) 청년의 목소리 경청 필요
- (6)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 (7)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

- (1) 심판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2) 조사관 사건 배정 방식 개선
- (3) 법정기간 내 심문회의 개최 철저
- (4) 부당노동행위 조사방식 개선
- (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 (6) 창조컨설팅 관련 사건 재조사
- (7) 단일노조임이 확실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불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8) 조정·판정 업무의 공정성 제고

(9)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 최저임금위원회 >

(1) 위원구성 다양화 및 임금 범위 조정

<9개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1) 직원 정년차별 철폐

< 근로복지공단 >

(1) 임대아파트 사무실 용도 변경

(2) 직장어린이집 공단 직접운영 확대, 과도한 영리행위 금지

(3)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정수급조사활동 시정

(4) 행정편의주의적인 산재보험처리 시정

(5) 의사의 오진 또는 과잉진료에 따른 치료의 산재인정

(6) 인력부족문제 해결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대책 마련

(7)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위한 운영지원 방안 마련

(8) 적극적인 산재인정으로 근로자 부담 완화

(9) 삼성백혈병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대책 마련

(10) 과로사 인정기준 개선

(11) 직업성암 인정기준 개선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직렬개편(능력개발직 신설) 재검토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2) 해외취업 연수기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계 규정 보완
- (3) 해외취업 연수기관 선정기준 강화
- (4) 청년아카데미 사업 사후관리 강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부적절한 산업안전방송광고 시정
- (2) 노·사 자율위험관리에 따른 사업장 위험관리방식 재검토
-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적정지원 대책 마련
- (4) 사고성재해기술지원의 재해예방 효과성 강화
- (5) 고소작업대 안전검사규정 마련
- (6)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 개선 방안 마련
- (2)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 (3)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4)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
- (5)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6) 장애특성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7)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차별적 요소 제거
- (8) 근로지원인 서비스 관련 개선대책 마련
- (9) 워크투게더 센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한국고용정보원 >

- (1) 인사규정 및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조치 실시
- (2)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대책 마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1) 위탁위주의 사업추진방식 개선
- (2)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 개선
- (3)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1) 개인성과 평가 개선방안 검토
- (2) 임용규정 개선을 통한 내부직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1) 고용노동연수원의 “대국민 노동교육서비스 강화” 기능 회복 검토 필요

< 노사발전재단 >

- (1) 기관 안정화 필요
- (2) 임원의 적기 인선
- (3)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권한 강화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 (1) 지하철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
- (2) 승강기안전기술원 노조탄압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3) 기상청 소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기상 예보 관련 사항】

- (1) 민간 협력을 통한 기상 예보 방안 마련
- (2) 기상예보 업무의 특별한 교육 및 인사관리, 처우개선 필요
- (3) 국가 수문기상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의 중복성 해소
- (4) 이안류 예보 및 정보제공의 중복 조정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5) 태풍 불라벤 경로 예측 관련
- (6) 가뭄조기경보시스템 추진 필요
- (7) 독자적 수치예보 시스템 개발 및 기상예보 정확성 확보
- (8) 장기예보 정확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9) 우주기상서비스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
- (10) 풍랑주의보 기준 현실화

【기상 장비 관련 사항】

- (1) 기상장비 국산화 노력
- (2)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개선 대책 필요
- (3) 기상청 장비 입찰 비리의혹 관련 철저 조사 필요
- (4) 기상청 발주 사업의 소수업체 독식 방지 대책 및 예산절감 노력 필요
- (5) 독도 무인관측소의 중단 재발 방지
- (6) 해양기상부이 고장 방지
- (7) 기상산업진흥원 장비유지 보수 업무 철저
- (8) 기상사업자 관리 실태 부실
- (9) 기상관측장비 고장 과다
- (10) 윈드프로파일러의 검수방법 마련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인사, 인력 및 조직 관련 사항】

- (1) 지진 관련 조직확보 및 투자 확대
- (2) 기상청 인력의 해양과학원 파견 및 기상관측소의 확대·강화
- (3) 국가태풍센터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
- (4) 기상조절, 인공강우 실험의 실용화 필요
- (5)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기상선진국 도약 필요
- (6) 지역기상담당관제 제도적 근거 마련
- (7) 산하기관 성추행 및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8) 검찰 및 경찰의 비위 통보에 대한 기상청의 처벌 미약
- (9) 대구기상대 및 울산 기상대 이전 관련 점검 필요
- (10) 제주혁신도시 이전 관련 대책 필요

【기상청 정보 접근성 관련 사항】

- (1)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개선
- (2) 기상청 모바일 앱 개선
- (3)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정보 전파 노력 증진
- (4)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철저

【기타 기상청 관련 지적 사항】

- (1) 후속위성 지상국 개발 예산 반영 노력 필요
- (2) 남북 기상 협력에 신중
- (3) 민간 기상산업 육성 전략 재검토
- (4)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정 포함 노력 필요
- (5) 백두산 화산 분화 관련 대책 마련
- (6) 슈퍼컴 2호기의 적합한 사용방안 마련
- (7) 구미 불산사고 관련 신속한 대응과 발생가능한 재해 대처를 위한 체계 구축
- (8) R&D 사업단 연구실적 관련
- (9) 언론 홍보에 치우친 기상청 업무보고서

4) 서울특별시 소관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환경 분야 >

- (1) 수도권매립지 관련 지적사항
- (2)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 저조 대책 마련
- (3)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실효성 확보 필요
- (4)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강화
- (5)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비산먼지 단속 강화 필요
- (6) 경인전철 지하화 계획 마련
- (7)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필요
- (8) 건축 설계 시부터 에너지 전문가 참여 필요
- (9) 한강 텃밭 사업 환경오염 우려
- (10) 에너지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11) 용산 미군기지 관련 적극 대응 필요
- (12) 한강 수계 무단 방류 관련 감시 대책 마련
- (13) 물이용부담금 제도 지자체간 협력 필요
- (14) 터널 내 공기질 관련 대책 마련
- (15)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 관리·감독 강화 필요
- (16)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율 저조
- (17) 녹조발생과 관련 시장의 처사 부적절
- (18)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책 마련
- (1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대비 준비 철저
- (20) 한강 수중보 철거 신중한 검토 필요
- (21) 월계동 방사능 폐아스팔트 관련 역학조사 계획 수립
- (22) 빗물관리시스템 제도 개선 필요
- (23) 빗물세 도입 신중할 필요
- (24)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관련 대책 마련
- (25) 환경보건 행정 강화 필요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현 황

- (26) 약수터 수질 관리방안 마련
- (27)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 (28) 강서 방화동 치현터널 사업추진 부실
- (29) 마곡지구 내 호수공원 개발계획 유지 필요
- (30) 환경기초시설 안전 관리 미흡
- (31) 음식물 쓰레기 처리 노력 필요
- (32) 청계천 자연화 추진 관련

< 고용 노동 분야 >

- (1) 간접 고용된 근로자 처우 개선
- (2) 서울시 공기업의 정년연장 노력
- (3)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 향상
- (4) 서울대공원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
- (5) 서울도시철도공사 산재예방조치 강화

나. 대상기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운영 필요

- ▶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주요 환경정책과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환경정책 협의기구인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2009년 이전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환경감시업무 강화 필요

- ▶ 원주지방환경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에는 환경감시단이 없어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에도 환경감시단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
- ▶ 지자체의 환경단속 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환경감시 인력도 부족한바, 지자체의 환경감시업무를 환경부로 복원하고 환경감시단의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할 것.

(3)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 ▶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인권·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완화이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327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공장입지 규제완화 이후 상수원 오염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환경부는 상수원 오염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할 것.

- ▷ 4대강사업 등을 이유로 수변구역을 매각 및 해제하였는데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을 자연상태로 보전토록 지정하는 것이므로 재조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 16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므로 복원시킬 것.

(4) 환경부 세입확보 방안 마련

- ▷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분 상향조정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5)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 필요

- ▷ 한반도의 환경보전과 환경분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남북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

(6) 현 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필요

- ▷ 환경부는 환경분야에서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검토할 것.

【상하수도 부문】

(1) 용산미군기지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 문제 및 대책

- ▷ 용산미군기지 유류 유출 사고 후 1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유출물질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벤젠 등의 수치가 기준치보다 매우 높게 검출되고 있는바, 정확한 오염원인 규명 및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가 SOFA 환경분과위에서 적극적으로 SOFA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2) 농촌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필요

- ▷ 농촌지역의 음용지하수 관정의 오염이 심각한바,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재발방지 대책

- ▷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이 생활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을 수년 동안 모르고 방치하는 등 상하수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하수처리장 가동율이 90%를 넘는 곳이 전국적으로 80곳 이상 확인되었는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같은 불법 방류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 각 지방청에서는 하수처리장 관리 부서가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인력보강 등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방사성물질 오염 지하수 식수 대체 방안

- ▷ 식수전용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지역에 대체 식수원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5) 클린주유소 시설 개선비 지원 필요

- ▷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기존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등 설치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6) 4대강 사업 총인처리시설 담합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

- ▷ 총인처리시설 36개 턴키 사업의 입찰결과 낙찰률 평균이 97.5%였고, 경기도 22개 총인처리시설의 평균 낙찰률이 99%에 이르고 있으며, 경쟁업체간 입찰 금액 차이도 미미하여 입찰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것.

(7)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 허용 검토

- ▷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 디스포저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이나 하구 관거에 대한 악영향이 없는 것을 조사되었으며, 선진국에서도 디스포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디스포저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보급 확대 등

- ▷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낮으며, 지역별로 차

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바, 상하수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지역별로 국고보조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균등하게 적용할 것.

(9) 상수도 종합관리 대책

- ▷ 하수도는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도에 대해서도 국가가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 ▷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이 22%에 달하고 있는바,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할 것.

(10)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지자체 부담 경감 등

- ▷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지자체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총인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먹는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질기준 위반시에는 과징금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2) 중수도 활성화 방안 마련

- ▷ 물부족 국가인 상황을 감안할 시 중수도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보 이는바,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인센티브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평가 필요

- ▷ 정비되지 않은 차집관거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연장선 에서 환경부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완료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할 것.

(14) 오산 미공군기지 불법 폐기물 관련 조치 필요

-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 작성 중 토양과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폐기물의 존재를 환경영향평가서 에 작성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인바, 이에 대하여 조 치할 것.
- ▷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으므로 오산 미 공군기지의 불법 건축 폐기 물 오염원에 대한 부지내 조사가 필요한바, 부지내 조사에 대하여 미군과 협의할 것.

(15) 산업단지 토양지하수오염 관련 대책 마련

- ▷ 「토양환경보전법」에는 공장내 토양오염 등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업체 공개와 처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하고 있는 ‘산단지역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감시’ 사업에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6) 군부대 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염 조사 대책

- ▷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조사로 인해 다른 기지 반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토양오염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지하수 활용방안 마련 및 먹는물 경도 규제 완화 필요

- ▷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3.2%에 불과하며, 정수기 사용 및 먹는 물 구매에 사용하는 비용이 과다하므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먹는물에 대한 경도 규제를 완화할 것.

【수질 부문】

(1) 4대강 사업 관련 지적사항

- ▷ 4대강 사업시 낙동강, 금강, 남한강 하류의 식물 식재 관련 협의 내용이 동일하고 식물식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인공서식환경에 식재된 수목들이 고사하고 있는바, 실태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 4대강 사업시 환경영향평가가 단기간에 졸속 및 부실하게 이루어져 개발의 면제부를 주었는바, 환경보전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것.

▷ 4대강 관련 사업장의 환경성협의 미이행이 많은바,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요구할 것.

▷ 4대강 보의 보강공사 등에 많은 양의 시멘트가 사용되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바, 시멘트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수질 안전성을 점검할 것.

▷ KEI가 한강살리기 평가 협의시 인공습지 조성은 지양하고 존치면적을 늘리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토해양부의 습지 훼손 면적을 묵인하고 대체습지 조성을 협의해 주어 결과적으로 습지가 많이 훼손되었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4대강 사업 후 생태계 환경변화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특히 대체습지, 어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파악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금강 백제보 인근 물고기 폐죽음 사태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보 사이에 쓰레기가 쌓여 수질이 악화되고, 보 사이 강 중앙부에 쌓인 쓰레기는 수거하기 어려워 이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추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는바, 4대강 사업구간에 대한 생태계 피해 조사를 실시할 것.

(2) 4대강 녹조발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 4대강 COD 개선 등 녹조발생 저감 방안 및 녹조 발생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 4대강 보로 인하여 녹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환경부는 조류억제를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빗물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조류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3) 하천 독성물질 관리 대책

- ▷ 하천에서 발암물질 또는 발암의심물질이 인체준거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는바, 대책을 강구할 것.

(4) 4대강 공사 준설선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 ▷ 낙동강유역에서 75척이 유류를 보관중이고 60척이 주변에 오일펜스도 설치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바, 국토해양부,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철거하여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 4대강변 유휴토지 활용 대책 마련

- ▷ 4대강변의 유휴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이므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하천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6) 수질악화 우려를 알고도 의도적 왜곡과 은폐 관련

- ▷ 2009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예측결과자료에 따르면 보 설치 후 체류시간 증가로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특히 녹조과다발생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는 수질보호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왜곡하여 오히려 수질이 좋아진다고 발표하였음. 그동안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자료은폐 및 위증으로 일관한 환경부 등이 보 설치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예측자료를 은폐하고 왜곡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

(7) 민관합동수질공동조사 실시 필요

-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 우려가 높고 환경부가 수질 측정 결과를 유리한 결과만 발표하는 등 신뢰도가 떨어져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민관합동 수질공동조사를 실시해 객관적 검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폐기물 부문】

(1) 방사성 도로폐기물 도심 방치 신속 처리 필요

- ▷ 노원구의 경우 방사성 도로폐기물이 폐기물 적치장이 아닌 곳에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폭우시 하수구·하천 등으로 유입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는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

(2)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60%이상이 불량이며, 의료폐기물이 허술하게 수집·운반 처리되고 있는바, 불량용기를 제조한 업자를 처벌하고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3) 폐형광등 재활용업체의 수은폐기물 처리 관리·감독 강화

- ▷ 폐형광등의 재활용 수준이 매우 낮으며, 폐형광등 수은폐기물이 적정하게 수집·처리되고 있는지 등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바, 수은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폐형광등 재활용협약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

(4) 폐젤리케이블 처리 관리·감독 강화

- ▷ KT 젤리케이블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나 폐기물에 대한 성분 분

석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바, 폐기물 처리 허가시 성분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반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한 폐젤리케이블에 대해 재처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5) 수입폐기물로 만든 불량 PVC하수관 제재 방안 마련

- ▷ 수입폐기물로 만든 중금속이 함유된 PVC하수관 등 불량 PVC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바, PVC 산업폐기물 수입 제한 등의 조치 등 불량 PVC관 제조·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PVC 파이프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술표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PVC파이프가 상하수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개선 등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 RFID 방식은 사용편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및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주민자율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시행이 용이한 전용

봉투 등의 방식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많고, 이는 2차 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

- ▷ RFID방식이 감량효과가 우수함에도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만 채택하고 다른 지자체는 봉투방식으로 변경하는 추세에 있는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7) 폐의약품 회수·처리 대책 마련

- ▷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관련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며, 특히, 아동들의 항생제 등 물약에 대한 회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고품연료화제도(SRF) 도입 관련

- ▷ 고품연료화제도(SRF)를 도입하는데 대해 국회·시민단체·학계·관련업계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제도적 보완 없이 급하게 SRF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바,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후 SRF제도를 도입할 것.

(9) 폐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대책

- ▷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폐가전제품 무상 문전수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 ▷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역회수체계로 수거되는 재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역회수 수거방식을 강화할 것.

- ▷ 생산자와 판매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율을 확대할 것.
- ▷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 기준비용이 실제 비용에 비해 낮아 재활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활용 부과금 현실화 등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생산자 또는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리사이클링 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수거된 일부 폐가전제품이 원거리로 이송·처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폐가전제품의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0) 폐타이어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

- ▷ 폐타이어 재활용과 관련하여 고무와 철심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시멘트킬른에 통째로 투입하고 있는 양이 연간 10만 톤인바, 폐타이어의 철심과 고무를 분리하는 업체를 중간처리업체로 포함하여 자원낭비를 막도록 할 것.

(11) 재활용 가능한 폴리프로필렌(PP) 수직보호망 의무화 필요

- ▷ 건축공사시 수직보호망으로 사용되고 있는 P.V.C망 소각시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폴리프로필렌(PP)과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 사용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

(12) 1회용 기저귀 재활용 방안 검토 필요

- ▷ 1회용 기저귀의 펄프와 합성수지 등은 자원 재활용의 가치가 충분하나, 달라진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여 1회용 기저귀 재활용 경제성 분석을 다시 추진하고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13) 쓰레기 소각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2만톤 이하 소각장의 경제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규모가 작고 여러곳에 산재한 소각장의 통폐합 등 소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폐기물 불법 매립 방지를 위하여 올바로시스템 개선 필요

- ▷ 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서로 결탁하여 불법매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개선할 것.

(15) 재활용 산업의 녹색일자리 정책 모색 필요

- ▷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재활용되지 않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활용산업을 창출할 것.
- ▷ 재활용산업은 환경적 효과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산업의 공공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적인 관리와 정책·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6) 군산 제2국가산단 폐기물매립장 동쪽사면 붕괴 관련 조치

- ▷ 매립장의 기본계획은 매립고가 지하 13.1m 이었으나 매립고가 지하 25m로 변경되었음에도 보강 없이 25m를 굴착하였고, 지질 조사 등도 부실하여 지반침하가 계속되는 등 사면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17) 방사능 폐석고의 공정시설 운영 문제

- ▷ 동부팜한농의 경우 생활주변방사능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인광석 사용을 해마다 늘리고 있으며, 이를 전량 재활을 하고 있어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는 공정시설로 운영함에 따라 주변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폐석고 이송관로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를 실시할 것.

【대기 부문】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확대 필요

- ▷ 주유시 발생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해 주유원의 백혈병 발생율이 높다는 분석이 있는바,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의무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
- ▷ 설치된 유증기 회수시설의 부적합률이 20%에 달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 굴뚝자동측정기기 국산화율 제고 대책 필요

-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국산화율은 '08년 보도자료 대비 현재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해외에서 오는 환경오염 관련 대책 마련

- ▷ 중국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 및 연구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중국 등 해외로부터 오는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추가협약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국가에 요청하고, 수질오염은 국토부와 협의 후 대책을 마련할 것.
- ▷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초자료조차 협력이 안되는 등 효과가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

(4) CNG 이동충전소 설치비용 보전 관련 대책 마련

- ▷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이동충전시설이 4곳 중에서 3곳이 운영 중지되었는데, 이동충전소 운영중지 및 철거에 따른 설치비용 보전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가스공사간 입장차가 있는바, 설치비용 보전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

(5)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 재검토 필요

- ▷ CNG버스는 폭발 등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은바, 천연가스 보급정책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6)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지침 변경 부적절

-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한 자기부담금 채무를 환경부의 지침변경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는바, 장치제작사의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소유자의 권리도 반영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자연 부문】

(1) 강원도 구만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실 관련 대책 마련

- ▷ 강원도 구만리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미이행 문제

- ▷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608건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60건을 차지하는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경법규를 무시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행 관리·감독 철저

-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바, 사업개발자와의 협의의견 조율 시 신속한 조치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4)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회복 필요

- ▶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조사업체에 대금을 환경부를 통해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환경부가 평가서 작성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 풀(pool)을 구성·운영할 것.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관련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인바,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에만 국고를 지원하기 보다는 피해보상에도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6)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조정에 대한 심사 철저 필요

- ▶ 골프장 개발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어 달라는 이의제기가 많은바, 자연 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하향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철저히 심사할 것.

(7) 사천 케이블카 시범사업 재심의 필요

- ▷ 사천, 지리산 등 케이블카 경제성 재검토서의 경우,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이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경제성 분석을 재실시한 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천케이블카에 대하여 재심의할 것.

(8) 곰사육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곰사육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9) 석탄재의 새만금산단 매립 수평배수층재 사용 문제

- ▷ 석탄재의 위해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매립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는 환경성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재앙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해상공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필요

- ▷ 해안, 섬지역에 맞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마련하는 등 주민과 탐방객의 수요를 파악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할 것.

(11) 친수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 ▷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도안갑천지구 등은 하천 주변 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체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수질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것.

(12)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선 필요

- ▷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가 징수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생태계 복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3) 영광 원전 온배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관련 조치 필요

- ▷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영광원전 온배수저감대책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대하여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대책을 직접 마련하여 사업자에 요청할 것.

(14) 광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 필요

- ▷ 광주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토해양부 지침 상 사업지가 연접개발제한 대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기관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는바, 확인·조치할 것.
- ▷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시 주민설명회

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미만 소각시설이라도 주민설명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사업규모나 주민 인구에 비례하여 주민설명회 참석인원을 설정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

(15) 대안없는 국립공원 지역 해제, 대책 마련 필요

- ▷ 이미 받은 공원사업 시행허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국립공원 지역을 해제하여 기존 사업자의 사업 이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피해가 발생한 바, 이는 경과규정 없는 국립공원 해체에 기인한 것으로 심히 부당한 처사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환경보호일반 부문】

(1) 구미 불산사고 관련 지적사항

- ▷ 구미 불산 누출사고시 위기대응매뉴얼 준수 미비, 관계기관 협조 미비, 정밀조사 미비, 정확한 정보제공 미비 등 부실대응으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바,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 각각의 물질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작, 별도 위기대응 전담기관 신설 등 화학물질 누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사고시 대응대책을 마련할 것.
- ▷ 정부합동조사 발표의 단기대책 이외에도 주민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중증, 경증 등으로 분리해 향후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 ▷ 매뉴얼대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및 청와대 등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경계경보 발령 및 심각단계 해제 결정을 환경보건정책관이 아닌 화학물질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과학원에서는 오전 3시에 불산 농도를 모른다고 보고를 했는데, 불산 농도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잘못된 대응인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불산 사고의 심각성을 사고 발생 8일 후에야 언론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고 발언하였으며, 사고 당일 정시 퇴근하고 추석 연휴에 휴가를 붙여서 쓰는 등 책임자로서의 자세 및 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해임할 것.
- ▷ 구미 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이 빈번한 울산, 여수 등 거점별로 특수화학분석차량 및 인력의 확충, 사고대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조직축소로 화학물질 전담 부서가 없어졌는데,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 ▷ 유해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는바, 유해물질 취급업체가 사고시 응급대응 장비 및 방제물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 화학물질 위험분류 기준을 변경할 것.
- ▷ 불산 농도와 관련한 기준이 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므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
- ▷ 지역주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관계자, 주민 등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방안을 마련할 것.
- ▷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
- ▷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담당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관리가 부실한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설립 시 취급물질에 맞는 안정장비 배치와 매뉴얼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2) 학교 운동장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 학교 운동장에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는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3)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현장 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 ▷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 받은 업체 중 실내공기질 허위측정 혐의로 법원에서 영업정지 판결을 받은 업체가 있는 등 현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검증이 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마련할 것.

(4) 환경청의 유해물질 취급업체 관리 및 사고 대비 부실

- ▷ 영산강청을 제외한 환경청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업체 점검율은 평균 26.6%이며, 적발율은 4.1%로 관리실태가 부실한 바, 환경부 차원에서 점검율과 적발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화학테러·사고대비 현황 점검 결과 7개 환경청의 장비 및 소모품의 내구연한(또는 유통기한) 초과율이 평균 30%에 달하는 바, 장비교체 및 소모품 보급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 환경청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현황 및 화학테러·사고 대응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또는 지수를 개발할 것.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2011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기준치 초과가

6.5%였고, 어린이집은 12.1%로 높게 나왔는바,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을 산술평균하여 실제보다 기준치 초과 수치가 낮게 집계되었는바,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
- ▷ 의료기관,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등 주로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내공기질 위반 건수가 많은바,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위반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 ▷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는바, 지하철 실내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실내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등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수준이 미흡한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 환기시설 관리기준 마련 등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 ▷ 어린이집 석면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237개소 중 83개소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리항목의 재조정할 것.

(6) 라돈 알람기 보급 확대 필요

- ▷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성이 있으므로 전국 학교, 어린이집, 저소득층에 라돈 알람기 보급을 확대할 것.

(7)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기준 마련 필요

- ▷ 소음발생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관리기준이 없는바, 고소음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전자파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의 사용 증가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규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파 관리기준 마련 등 사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은 성인의 1.5배 가량 높은바,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어린이 휴대폰 사용방법 등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9) 대학 연구소 내 화학물질 관리 강화

- ▷ 대학 연구소 내 화학물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0)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강화 필요

-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를 4년 마다 해당년도 1년치만 하고 있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조사주기 및 조사방법 등을 개선할 것.

(11) 환경 R&D 투자 확대 필요

- ▷ 국내 환경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의 해외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인바, 환경이슈 해결 및 세계 환경시장 진출을 위하여 환경 R&D 투자를 확대할 것.

(12) 생활소음 줄이기 대책 실효성 제고

- ▷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전체 지역이 소음의 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생활소음 줄이기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13) 터널 내 공기질 관련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설정

- ▷ 터널 내 공기질 관련하여 미세먼지나 벤조피린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퀵서비스 운전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설정할 것.

(14) 가슴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

- ▷ 슬레이트 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에 비추어 가슴기 살균제의 경우에도 환경성질환으로 보아 법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15) 나노물질 관련 관리제도 마련

- ▷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에서 폐기까지의 전주기적 나노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한바, 향후 규제 방향과 제도적 보완계획을 마련할 것.

(16) 환경성 질환 저감 대책 필요

- ▷ 환경성질환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마련하고, 각 지역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를 증설하는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할 것.
- ▷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7)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개선

- ▷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킬 것.
- ▷ 행정안전부, 농림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가 진행 중인 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슬레이트 주택은 대부분이 농어촌 저소득층이므로 지붕 철거비 이

외에도 지분을 개량하는 비용도 지원할 것.

(18) 환경산업 육성 초창기부터 지원 필요

- ▶ 제대로 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이나 사업을 마련하는 등 환경산업의 기초가 되는 창업부터 정착 때까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

(19) 환경표지제도 민간부문으로 확대 필요

- ▶ 146개 인증품목 중 42개(29%) 품목군만 생활체감형이고 나머지 104개 품목은 공공조달부문으로 편중 운영되고 있는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 환경표지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0)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개선 방안 마련

- ▶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채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환경부에서 초등학교 환경교재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피해 보상대책 마련

- ▶ 아시아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들의 피

해는 분진 피해로 환경성질환으로 볼 수 있는바, 환경보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할 것.

- ▷ 아시아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에 대하여 환경부가 먼저 피해보상을 하고, 아시아시멘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시멘트 분진 피해 관련 삼척, 단양 지역 외 역학조사 중인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22) 캠프캐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 ▷ 지역 주민들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프로그램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 캠프캐럴 인근 지역 거주자 외에 캠프캐럴 인접 지역에 거주하다가 외지로 이주한 주민들 중 캠프캐럴의 유독물 불법 폐기물에 의한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

(23) 국책사업의 사업단장의 정치적 활동 관련

- ▷ 환경부 R&D 사업단을 맡고 있는 사업단장이 특정 대선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항】

(1)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 비정규직 개선방안 마련

- ▷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우 타 기관 보다 비정규직이 많고, 임금수준 역시 열악하며, 2년 단위의 반복적 인력대체로 인해 근로의욕 상실,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공공부문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인력의 비중이 증가하여 11년 기준으로 30%에 육박하고 있고,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수의계약이 빈번하고, 시중 노임단가 적용 및 용역체결시 고용승계-고용유지 조항 명시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요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대책을 즉각 실시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강구할 것.

(2)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 쓰레기매립지 골프장 운영방식과 관련한 갈등으로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처리에 문제가 있는바, 갈등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 ▷ 주민협의회는 본연의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가 ‘확인’으로 되어 있는바, 규정을 ‘입회’ 또는 ‘참관’으로 개정하

는 등 제도개선을 할 것.

- ▷ 미흡한 분리수거와 불명확한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준법감시’ 논란은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으므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건설폐기물은 배출자가 분리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소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조치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관련자를 문책할 것.

(3)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명 제한 규정 마련

-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임원 중 주민지원금을 횡령하다 적발되어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4) 한국환경공단 입찰비리 감사원 감사 요구 필요

- ▷ 입찰비리 관련자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감사가 부실하고, 관련자 징계 등이 부실하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것.

(5) 환경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대책 마련

- ▷ 환경공단의 입찰비리 문제, 수도권매립지 공사 등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 ▷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일본 수입폐기물 관리 대책

- ▷ 낙동강청의 일본 수입 폐플라스틱에 대한 측정결과 세습이 기준초과로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일본 수입폐기물에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주청과 낙동강청을 제외한 5개 청은 일본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일본 수입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바, 일본 수입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환경공단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재활용의무생산자 등 12개 업체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허위제출로 고발하였는바, 이행실태점검 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9) 부산 취수원의 수질개선 대책 마련

- ▷ 부산 수돗물 취수원(94%)인 물금·매리상수원 수질이 다른 지역의 수질 보다 좋지 않은바,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청 공통사항 ◀

【7개 지방청 공통 지적사항】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관리·감독 필요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조치계획 미제출 건수가 다수 발견되는 등 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바 대책을 마련할 것.

(2) 화학물질 사고 대비 인력 및 장비 확충 필요

- ▷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것.
- ▷ 유해화학물질 점검실적이 저조한 바, 점검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모의훈련을 보다 충실히 할 것.

(3) 전국 정수장 수질사고 위기대응체계 미흡

▷ 전국 36개 정수장 수질사고 위기대응체계 점검결과 30개의 정수장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4)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후관리 부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미이행 사업자 중 정부부처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으므로, 환경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

▷ 모래톱 조성 등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공사중지나 협의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실검토에 대한 방지책도 없는 등 문제가 많은바, 「서식지 조사항목」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내용뿐 아니라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한데 사후관리 대상사업장 중 검점한 곳이 한강청 26.7%, 금강청 15.5%, 영산강청 27.4%, 원주청 17.6%로 매우 낮아 협의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진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대강 유역환경청 공통 지적사항】

(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상의 문제

- ▷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서와 집행내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수계관리기금이 여유자금 운용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지만, 자체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보 설치로 인한 회유성 어류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 「보 설치 전·후 회귀성 어종의 이동경로조사 및 어도 효과분석」 용역에 따르면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보 설치로 인해 회유성 어종의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바, 수중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4대강사업 후 생태계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 ▷ 4대강사업 후 오히려 어도가 물고기 생존을 위협하고, 대체습지가 부실하게 조성되었고 식재나무의 무더기 고사 및 외래식물 번성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그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한강유역환경청 ◀

(1) 물이용부담금 개선 필요

- ▶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을 놓고 상하류 지역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 서울시 공무원의 한강청 파견 관련

- ▶ 한강유역감시단의 한강청 직원이 서울시 파견공무원의 1/3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강원도 등 5개 시·도에 대한 환경감시를 하고 있는바, 제도를 개선할 것.

(3) COD 중심 수질관리 필요

- ▶ 한강수계의 BOD는 개선되고 있지만 COD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COD 중심의 수질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것.

(4) 즉각방류 등 조류대책 필요

- ▶ 4대강 녹조 발생시 비상 방류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던 바, 녹조발생 초기에 즉각적으로 방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5) 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및 증설 필요

- ▶ 초과방류되는 하수처리시설 중 다수가 ‘수질보전특별대책’, ‘상

수원보호구역’ 등 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바, 하천 오염이 우려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설이 증설·정비되도록 할 것.

- ▷ 관할 수계에 하수처리장 중 유입되는 하수보다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초과되는 하수를 처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이나 호소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바, 그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6) 국제적 멸종위기종 철저 관리

- ▷ CITES종(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바, CITES종에 대한 점검항목에 건강상태와 서식환경을 추가하고 정기적 점검을 의무화하고, 독립부서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며,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7) 남양주시 하수 불법 방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남양주시가 상수원에 오수를 불법 방류한 사건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남양주시처럼 ‘유량조정조’가 없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것.
- ▷ 하수관거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원인이며, 화도처리장 가동률이 연간 100%에 가까운데 가동률이 이처럼 100% 육박하는 곳은 무단방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히 조사하고, 증설 또는 정비되도록 할 것.

(8) 대체 습지조성 개선 필요

- ▷ ‘11년 대체습지조성계획’ 과 ‘12년 대체습지 조성 현황’ 을 살펴보면 계획과 달리 대체습지가 조성되고, 면적 증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습지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 한강 식수 대책 필요

- ▷ 조류발생으로 인한 한강 식수대란이 발생한 배경에는 조류감시활동 중단, 지오스민 측정 중단, 서울시의 조류경보 확대 발령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문제 등이 있는바,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10) 자병산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관련

- ▷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인 자병산 광산이 무너지는 산사태가 있었는데 무리한 채굴방법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부실한 백두대간 관리와 사후영향평가 관리가 낡은 인재로 볼 수 있고, 또한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해 광산개발에 따르는 환경적 저감과 항구적인 생태복원 추진을 약속하였으나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바, 이에 대한 대책과 환경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확보 필요

- ▷ 상수원 수질오염방지 장치로 오탁방지막이 없는 구역이 다수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비 대책을 마련할 것.

(2) 녹조 발생 관련

- ▷ 낙동강 녹조 발생이 극심했던 기간 청장이 휴가를 다녀온 것은 적절한 처사로 보기 어려우며, 녹조 문제에 지장없을 때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
- ▷ 조류확대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서는 조류경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취·정수장 인근에 조류경보제 도입을 검토할 것.
- ▷ 녹조발생 원인에 대하여 체류기간으로 조류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바, 낙동강의 대안은 일정수량이 계속 하천을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4대강 사업의 과오를 밝힐 것.
- ▷ 보 설치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로 낙동강 상류에 녹조가 발생한 것 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측면이 크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점검할 것.

(3)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낙동강의 준설과 보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태파괴가 많고, 수질정화기능이 상실되고, 습지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크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점검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서식수변환경 불량환경 증가, 습지 감소, 철새 감소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대체습지 대상 지역이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것.
- ▷ 사자평 습지 보호지역의 육지화 문제가 심각한데, 습지가 훼손되기 전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습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점검할 것.
- ▷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습지를 생물다양성유지공간으로 지정하여 생태축 구성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총인처리시설의 운영미숙 대책 마련

- ▷ 총인처리시설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지자체 운영비용도 늘어나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5) 의료폐기물 지도 점검 철저

- ▷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이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는바, 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토지매수사업 효율성 제고

- ▷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의 토지보다 수질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토지의 매수 비중이 높으므로,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물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

- ▷ 녹조 해결을 위하여 초기 방류가 필요한데, 국토부와 업무 분장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

(8) 오염물질배출 시스템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오염물질배출 적발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낙동강유역 점오염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환경오염배출 실제위반수치와 지자체 점검시 적발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 증진

- ▶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개선실적은 미미한 수준인바, 수질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주요 낙동강의 취수장 원수의 수질이 높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도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 유해화학 처리장비의 내구연한 적정화 및 자격 획득 필요

- ▶ 낙동강청이 보유중인 화학유해물질사고대응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 전 직원이 유해위험물관리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11)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 필요

- ▶ 일본에서 수입되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기물 중 국내에 방치되는 폐기물이 많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수입허가를 낼 때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

(12) 양산어곡 골프장 건설 계획 협의 내용 공개

- ▶ 양산어곡 골프장의 예정지가 수림이 우거지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 부적합한 측면이 많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13) 어도 설치 시 생태적, 환경적 요인 고려 필요

- ▷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어도의 경우 부적정한 위치선정, 어류 특성과 차이가 있는 공법 선정 등의 문제가 있는바, 환경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1) 구미 불산 사고 대응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소방방재청의 상황전파 시각과 환경부의 상황전달받은 시점이 다른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이며, 소방방재청의 제독작업 완료 전 환경부가 경계경보를 해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환경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고피해가 확대된 것인지 진상을 규명할 것.
- ▷ 구미시의 주민복귀 결정에 환경부나 대구청이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바, 문제를 파악할 것.
- ▷ 지방청이 보유한 화학제독 장비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점검할 것.
- ▷ 불산과 관련된 위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없이 문제없다는 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화학물질 관련 업무는 많으나 관련 인력은 부

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담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 ▷ 불산의 측정장비가 없어서 사고 대응에 늦었던 것인데, 현재 사고 대비물질 관련 인력, 장비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를 확보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인력충원, 장비충원,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할 것.
- ▷ 재난 대책에서 환경부의 전문인력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 재난 발생 이전 사전에 모의훈련 경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하수 유입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것.
- ▷ 화학사고상황보고서 등 유출사고 관련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습득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구미시로의 정보전달이나 대처 미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풍량, 풍속 등의 기상을 예측하여 위험지역을 선정할 것.
- ▷ 환경부가 사고 수습에 있어 역할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사고 상황 해제는 부적절하므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시스템의 확인도 병행할 것.
- ▷ 구미 불산 관련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과학적 여건 등을 다 파악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전 부처적으로 논의할 것.
- ▷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사고에 대응하고 이를 처리할 것.
- ▷ 위기대응매뉴얼대로 사고에 대응했다고 보기에겐 허점과 빈틈이

많았으며, 매뉴얼에 의하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직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보고와 전파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을 수립할 것.

- ▷ 대구청의 화학물질관리과 폐지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인력이나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본부와 협조하여 이를 추진할 것.

(2) 대체 습지 조성에 철저한 사전 계획 필요

- ▷ 대체 습지 조성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태학적 조사도 없이 면적에만 맞게 대체습지를 승인함으로써 습지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할 것.

(3) 대구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보건평가 실시 필요

- ▷ 대구지역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배출오염물질에 대하여 저감노력과 노출방지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본부와 협조하여 추진할 것.

▶ 영산강유역환경청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급증

- ▷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영광 원전 온배수저감시설 미설치에 대한 조치 필요

- ▷ 영광·고창 지역 144개 어장이 기능을 상실하였는데 이는 영광 원전의 온배수 때문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바, 온배수저감시설 미설치에 대한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 후 보고할 것.

(3)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설명회 무산 관련 재조사 필요

- ▷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추진 중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과의 분쟁이 있음에도 허가하였는바, 재검토할 것.

(4) 도서 지역 관리 위해 영산강청 인력 및 예산 확대 필요

- ▷ 전체 도서의 54%를 영산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할 것.

(5) 광양항 항로 준설 사업 주민의견 수렴 필요

- ▷ 준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관련 주민설명회를 할 때 총 참석자가 8명 밖에 안되는 등 소수에 의해 진행되어 주민들과 큰 분쟁이 있었는바,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

(6) 영산강수계 토지매수 확대 필요

- ▷ 영산강수계의 토지매수 대상 토지 중 1.9%밖에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바, 해결책을 마련할 것.

(7) 국제적 멸종위기종 철저 관리

- ▷ CITES종(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바, CITES종에 대한 점검항목에 건강상태와 서식환경을 추가하고 정기적 점검을 의무화하고, 독립부서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며, 국제멸종위기종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8) 목포 도심 침수 문제 해결 필요

- ▷ 목포시의 빗물펌프장 용량이 부족하고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어 집중호우시 목포 도심이 침수되고 있는 바, 대책을 마련할 것.

(9) 환경유지용수 확보 필요

- ▷ 영산강유역은 유량 부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농업댐 증고사업을 추진중이나, 증고사업으로도 유량부족이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승촌보와 죽산보의 담수 및 담양과 화순의 홍수조절지의 담수를 활용하는 등 환경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10) 하수처리장 개선 대책 마련

- ▷ 영산강청의 경우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90% 넘는 곳이 12곳인바, 하수처리장 개량·증설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금강유역환경청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급증

- ▷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4대강 사업구간의 어도와 대체습지 개선 필요

- ▷ 어도가 물고기 생존을 위협하고, 대체습지가 부실하게 조성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 사육곰 관리대책 마련

- ▷ 금강유역환경청 내에서 사육곰이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바, 곰 탈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사육곰 관리대책과 상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육곰 정책의 폐지를 위해 조속히 정책을 마련할 것.

(4) 4대강 공사 준설선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 ▷ 4대강 공사에 사용된 준설선 18척이 하천에 방치되어 기름 누출 등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폐수처리시설 가동률 제고

- ▷ 폐수처리시설이 폐수가 적어서 가동률이 낮아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바, 가동률 예측 자료를 마련할 것.

▶ 수도권대기환경청 ◀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과다 설정

- ▷ 배출허용총량은 실제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인데, '08 ~ '11년 현황에 따르면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허용총량을 재산정할 것.

(2)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마련 필요

- ▷ WHO가 경유차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직분사방식 휘발유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디젤엔진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도로변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여 노점상, 환경미화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4년 종료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의 후속대책 수립 등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개선할 것.
- ▷ 수도권 대기오염도가 OECD 1위인데, 최근 2년간 주요 자동차 생산·수입회사가 배출가스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은 20억에 불과한바,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3) 저공해차 의무구매 홍보·교육 강화 등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이 저조한데,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저공해자동차 모델을 공급하는 등 저공해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4) 친기업적 규제완화 관련

- ▷ 환경부는 규제부처이며, 규제완화는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인데, 친기업적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대기질이 악화되었는바, 규제완화에 따른 저감방안 마련 등 대안을 마련할 것.

(5) PM2.5 대책 마련 필요

- ▷ PM10 농도가 줄어드는 등 대기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관리기준 마련·측정소 증축·저감목표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6) 2차 특별대책 수립 관련

- ▷ 2차 특별대책에서는 1차 특별대책에서 이루지 못한 관리목표와 관리항목 확대를 포함할 것.
- ▷ 예산구조의 경우 1차 특별대책에서는 90% 이상이 자동차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후퇴했던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음식점 등 생활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에 대한 사업을 검토할 것.

(7) 대기 관련 규제 후퇴 관련

- ▷ 2005년도부터 1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해왔으나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크게 저감되지 않았고 대기배출 초과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 대기총량관리 항목 제외 등 대기 관련 규제가 후퇴하였는바, 이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원주지방환경청 ◀

(1) 골프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 관련

- ▷ 생태환경이 우수한 강원도에 골프장 건설이 집중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주민 및 환경단체 반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지 않도록 할 것.
- ▷ 골프장 사업자가 식생조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청이 조사한 내용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하여 사업을 인허가한 것 때문에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당시 골프장 허가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강원도지사에게 환경부에서 요구할 것.

(2) 동강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 동강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라 그 업무를 3개 군과 원주청에서 담당해야 하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바, 동강관리출장소 등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

(3) 대암산 습지 문제 해결 필요

- ▷ 국방부와 협의하여 대암산 군부대 이전 등 조치를 강구하여 습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 새만금지방환경청 ◀

(1) 폐기물매립지 침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대처

- ▷ 2012년 8월 집중호우시 폐기물매립지가 침수되었는데 방치시 주변 수질의 오염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크고, 폐기물매립지를 이용하던 256개 업체도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신속히 대처할 것.

(2) 새만금 수질오염 해소 위해 해수 유통 필요

- ▷ 새만금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유역수질보전대책을 수행중이나 해수 유통 없이 수질오염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바,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분쟁조정의 재심제도 필요

- ▷ 분쟁위의 재정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비율이 높은바, 재심제도를 검토·운용할 것.

(2) 방사능·전자파 등에 대한 분쟁 조정 필요

- ▷ 환경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항목에 방사능,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시켜서 대응할 것.

(3) 불복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 저조 문제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 인용률이 저조한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역할 홍보 강화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분쟁 조정 제도 이용을 활성화 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 ◀

(1) 국립환경과학원 근무기강 확립 필요

-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휴가 당일 아침에 연가를 신청한 경우가 전체의 44.9%이고, 환경부 징계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으며, 연구실적이 없는 연구직 공무원도 다수라는 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근무기강이 엉망인바,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 ▷ 국립환경과학원의 준위험지역 범위를 잘못 전달하였고, 부정확한 검사방법으로 불산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통보 또한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는 등 대응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관련한 정규직이 거의 없고 비정규직이 다수이며, 간이검사 후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철수하는 등 분석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화학전문가 등 화학사고 대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대응매뉴얼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불산사고를 분석하고 통보한 시간이 너무 늦었고, 계속 바뀌는 기상정보를 시뮬레이션 작업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과학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연구역량 강화 관련

- ▷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외부 학자가 쓴 보고서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이 제2, 제3저자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은 등 연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실태 조사 및 개선안을 마련할 것.

(4)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정치활동 등 관련

-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인데 SNS를 통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치적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조국 환경이 미래다’라는 저서에서 좌경화된 환경운동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이는 근거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원장은 대운하토론회에서 대운하에 배가 다니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녹조에 따른 수돗물 공포가 근거없는 것이라는 신문 기고도 한 적이 있는바, 과학적 근거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잘못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출퇴근에 쓰면 안되는 관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등 그 처신에 잘못이 있는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퇴할 것.

(5) 4대강 수질예측 관련

- ▷ 2009년도에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예측 결과에 따르면 보 설치 후 수질이 악화되어 기존의 수질관리계획만으로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고 추가 삭감계획을 포함해야 한

다고 나와 있는 바, 수질개선 대책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나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 조사하여 결과자료를 제출할 것.

(6) 라돈 실태조사 및 사후대책 관련

- ▷ 국립환경과학원의 ‘주택 4계절 라돈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이 23%에 달하는 등 라돈 문제가 심각한바, 라돈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설정,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전국 라돈지도를 시급히 작성할 것.

(7) 캠프캐럴 오염사고 관련

- ▷ 캠프캐럴 오염사고로 인한 지하수의 일부 오염만 확인되고 건강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는바,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생물자원관 ◀

(1) 4대강 공사구간의 철새 감소

- ▷ 겨울철새 동시센서스 201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철새가 많이 줄었는바, 4대강 공사로 인한 수변공간 훼손 등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4대강 사업의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

(2)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자생생물 확보 대책

-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주권이 낮은 국가는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자생생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해외생물자원 조사 관련

▷ 자생생물 조사·발굴이 시급함에도 해외생물자원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용역 계약 및 내용·조사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바, 나고야 의정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용생물자원 발굴 확대, 용역 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생생물 발굴 또는 북한지역 자생생물 조사도 강화할 것.

(4) ABS 센터 홍보 및 활성화 필요

▷ ABS 센터의 상담건수가 15건 밖에 안되는 바, 센터 홍보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9명 밖에 배출되지 않았는바, 환경측정분석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전담교수 도입 필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분야의 전문교육기관이나 전담교수는

한 명도 없는바, 교육효과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교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1)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제고

-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 당초 방침과 달리 형식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 수행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환경공단 ◀

(1) 라돈 저감대책 관련

- ▶ 라돈 저감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보호가 매우 필요하나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컨설팅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소수에 불과한바, 대책을 마련할 것.

(2) 환경기초시설 공사 현장감독 인원 및 정규직 비율 확대 등

- ▶ 환경기초시설 공사의 현장감독자 부족으로 관리·감독 및 민원 등 처리에 문제가 있는바, 현장감독 인원 및 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것

- ▷ 환경기초시설 공사 후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한국환경공단 직원간 임금격차 해소

- ▷ 기관 통폐합에 따른 임금격차문제가 심각하여 내부 단결에도 문제가 있는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 ▷ 환경공단 전체 직원의 23.2%가 비정규직 직원인데 2012년 정규직 전환실적은 한 명도 없는바, 환경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그 전환률이 크게 떨어지므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추진할 것.

(5) 굴뚝자동측정기 국산화율 제고 관련

- ▷ 2008년도에 국산화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루어진 것이 없는바, 관련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굴뚝자동측정기 국산화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6) 산업단지 토양오염 무방비·무대책

- ▷ OCI 광양공장은 1997년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왔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토양오염량이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는바, 그 경위를 보고하고 정화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

(7) 입찰비리와 임직원 비리 관련

- ▷ 총인처리시설 사업 낙찰률을 보면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크고, 환경공단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며, 공단에서는 구조적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 턴키공사 입찰비리에 연루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고, 공단 직원이 문제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는 등 환경공단의 입찰비리 근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수주 방식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환경공단의 비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실패로 낙하산 인사의 무능한 경영, 내부 비호세력 존재, 감사시스템 붕괴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절반 이상은 내부인사고 외부 인사도 공무원이 다수이며, 이 명단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 로비하기 쉬운 구조인바, 체도를 개선할 것.

▶ 국립공원관리공단 ◀

(1)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작업 관련

- ▷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작업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

여 체계적 제거와 확산방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2)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처우 개선 관련

-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그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등 애로사항이 많은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관사 노후가 심각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임금 저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개선을 추진할 것.

(3)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 ▷ 설악산 케이블카는 8년 연속 흑자기업인데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적은 없는바, 케이블카에 대한 사업권을 회수할 것.

(4)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및 성수기 주차난 대책

-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탐방로 훼손이 심각하고 성수기에 주차난이 극심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5)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출입 문제

- ▷ 비법정탐방로에는 안전시설이 없고 관리가 미흡한데 불법출입이 늘고 있어 문제인바, 불법출입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국립공원 등산로 산사태 위험지역 대책 마련

- ▷ 공원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안내표지판 등 산사태 위험지역을 알리는 등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7) 국립공원 내 역사문화자원 체계적인 관리 필요

- ▷ 국립공원 내 역사문화자원 관리를 위한 전문직 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산사태 예방시설물 설치 필요

- ▷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악산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해상국립공원 업무 수행 위한 선박 필요

- ▷ 국립공원의 42%가 해면관리면적이거나 선박은 3척 밖에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10) 공원 내 화장실, 청소년수련시설 등 설치 관련

- ▷ 공원 내 화장실, 야영장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게 배치되어 있어 다수의 탐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그 기준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골프장 운영 관련

- ▷ 골프장 운영방식이 결정되기 전에 인력을 뽑고, 당초 계획과 달리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등 골프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는바, 문제점을 점검할 것.
- ▷ 수도권매립지에 짓고 있는 골프장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만든 것이므로 환경부 및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 ▷ 주민지원협의체는 본연의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2)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활동 관련

- ▷ 주민지원협의체가 골프장 운영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준법감시활동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임. 주민지원협의체가 본연의 활동을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협의체의 이권개입이 없도록 골프장 운영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
- ▷ 쓰레기 불법감시를 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 18명이 불법집행 등으로 사법조치를 받은 바 있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위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할 것.

(3)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공사비 증액 부적절

- ▷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2번의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사용 결정된 이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골프장 건설공사 기간 중 당초 보다 167억원이 증가된 것이 설계상 문제이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되는바, 공사비 증액 원인을 조사·보고할 것.

(4) 수도권매립지 상습 불법폐기물 반입회사 근절 대책 필요

- ▷ 특정업체에서 벌점과 가산금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 불법매립을 수년간 해오고 있지만, 공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상습 불법폐기물 반입회사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5)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 ▷ 제3매립장(31만평) 조성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골프장 운영 등의 문제보다는 본연의 업무인 폐기물관리에 더욱 집중할 것.

(6)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편익시설 설치 필요

- ▷ 20여년 동안 피해를 감수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협소한 체육공원 밖에 없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관련

-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당집행으로 적발된 것이 268건인데 상습적인 부당집행자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환경벤처센터 운영 관련

- ▷ 환경벤처센터는 환경기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환경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것.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 ▷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였으나 아직도 비정규직이 다수 있는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기후변화대응 R&D 확대 필요

- ▷ 자연재해, 폭염, 가뭄 등 국가적 환경재해를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지원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R&D를 확대할 것.

(5) 환경산업융자 증액 필요

- ▷ 환경산업육성융자와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자금은 기업의 호응이 높고 그 필요성이 큰 바, 예산을 증액할 것.

(6) 환경표지인증제도 인증취소 관련

- ▷ 인증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한 바,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인증받은 후 취소한 업체와 작은 실수로 취소된 업체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공통사항】

(1) 정책연구용역 관련 법령 준수 및 활용도 제고

- ▶ 정책연구용역 발주시 예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처리하고, 연구결과 활용보고서를 적기에 공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2) 직원 근무기강 확립

- ▶ 고용노동부 소속 일부 공무원이 겸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할 것.
- ▶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 사법처리된 자를 위해 모금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함. 직무감사를 실시할 것.
- ▶ 창조노무법인 및 컨택터스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관작업’이라는 부끄러운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공무원이 관계 업체로부터 일체의 부적절한 선물 기타 향응을 제공받지 말 것.

(3) 서훈 및 표창 수상자 선발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참가자,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정책연구용역 수행자 등이 근로자의 날 기념 포상을 받고,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이 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음. 서훈 및 표창 수상자 선발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것.

(4) 부족한 인력의 적기 확충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일부 지방관서에는 육아휴직 등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적기에 근로감독관 등 결원을 보충할 것.

(5) 지방관서 관할구역 변경 재검토

- ▷ 경북 울진군을 종래 포항지청에서 태백지청 관할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할구역 변경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필요

-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제노동기구 가입 연혁 등에 비추어 현재 ILO 협약 비준 실적이 저조하므로 전향적인 자세로 핵심협약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7) 국회 요구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신속한 제출 필요

- ▷ 노사관계 선진화사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근로시간면제제도 점

검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상임위 전체의결이 있고 나서야 간단한 정보만을 수록하여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회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임. 이에 대해 개선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사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것.

【고용 부문】

(1) 공공기관부터 차별적 채용관행 개선에 솔선수범

- ▷ 학력 및 스펙 초월이라는 채용과정의 최근 흐름에 반하여 일부 잡페스티벌 행사시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만든 이력서(내용: 가족관계, 신체, 신장 등)를 사용하였는 바, 공공기관부터 차별적 채용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토록 할 것.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 ▷ 2011년 여성고용다수사업장 985개소 중 854개소(87%)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고, 이 중 성희롱 관련 건수가 37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위한 조치 마련

- ▷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 ▷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장애인 고용이 특히 낮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4)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대책 강구

-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민간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구

-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수급 반환금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6)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참여대상 확대방안 검토

- ▷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미취업 청년은 일률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인턴의 경우 취업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청년층 홍보 강화 필요

- ▷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등 취업

지원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앱 등의 방법으로 제도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

(8)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 시행계획이 없는 상태임. 기업규모를 더욱 세분화하거나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의 고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것.

(9)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유도 대책 마련

- ▷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MOU 체결을 장려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것.

(10)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보완

-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전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통계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망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것.

【노동 부문】

(1) 과도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 점검 자제

- ▷ 고용노동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여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근로시간면제한도 실태 점검을 이유로 과도하게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개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2) 고용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여부 조사 및 처우개선

- ▷ 고용센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 고용센터 내에서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비교할 때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지 않은지 조사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3)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에 대한 높은 평가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전문강사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해소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 기간제 교원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활성화 및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실적 및 홍보가 매우 저조하고, 일부 관서의 경우 사건을 다른 관서로 떠넘기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 ▷ 연소근로자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것.

(6) (주)KT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 ▷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주)KT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나 대상 사업장이 적었을 뿐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내용 및 후속조치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바, KT의 모든 지사 및 계열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재실시할 것.

(7) 일부 부처 무기계약직 고용불안문제 시정 등

- ▷ 일부 부처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가가 저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무성적평가를 상대평가방식으로 진행하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통일부와 조달청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므로, 이들 부처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

(8)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심야노동과 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9) 콜센터 상담원 근무환경 점검 및 개선책 마련

- ▷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들이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을 겪으면서 상당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바, 상담원들의 근무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 산재병원 공공성 강화 지원 개선

- ▷ 산재병원의 건전한 운영 및 재활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산재기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술발전·환경변화·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이를 개선할 것.

(12) 산재보험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

-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신규사업에 따라 고용정보관리를 위한 인력수요가 많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충원에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국세청자료,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3) 야간노동 관련 질환 직업병인정기준 마련

- ▷ 야간노동이 2급 발암요인이라는 국제회의 발표가 있었으므로, 야간노동에 따른 주요 질환인 수면장애와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직업병인정기준 및 실질적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

(14) 중대산업사고 예방관리 대상을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관리 대상을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대상사업장 중 양호등급 사업장 및 불량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기준을 강화할 것.

(15) 방사전 노출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 ▷ 방사전 업무는 안전보건 조치가 소홀한 협력업체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청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향후 산업안전 보건법 제28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

- ▷ 산업현장에서 방사선기기 활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방사선기기 사용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방사선노출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6) 사내하도급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 ▷ 일부 사업장에서 정규직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내하도급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 철도공사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급여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에도 그 책임을 공사와 하도급업체 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임.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사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

(17)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 ▷ 현대자동차 노사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불법파견의 규모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할 것.

(18)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조항 재도입 검토

- ▷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조항이 2007년 고용의무조항으로 바뀐 후 일부 대기업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고용의제조항을 다시 마련하거나 고용의무조항과 병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9)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실태 점검

- ▷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각 지방노동청별로 근로자파견업체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와 행정조치 사항을 보고할 것.

(20)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 ▷ 복수노조 하에서 노노간 또는 노사간 갈등을 겪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21)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 ▷ 사용자 등이 노무법인이나 경비용역 등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통해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할 것.

- ▷ 창조컨설팅 외에 창조시너지, 창조인재개발, 비전컨설팅 등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2) 사용자의 노동조합 설립 개입에 대한 조사

- ▷ 유성기업,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의 제2노조의 설립에 회사가 개입하였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

(23) 발전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 동서발전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선거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으므로, 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24) 노무법인 감독 철저

- ▷ 일부 노무법인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노동조합 파괴나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자문을 하고 있으므로, 노무법인의 업무 및 활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25)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일부 대기업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가 대기업을 위한 면죄부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음. 이행강제금을 기업의 규모 또는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도급사업주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원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

(26) 언론사 파업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시

- ▷ MBC, YTN, 국민일보 등 언론사 파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전직 등이 이어지는 등 사태가 심각하므로, 특별근로감독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7) 직장폐쇄 남용방지 대책 마련

- ▷ 직장폐쇄가 남용되지 않도록 교육, 지도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 “SJM의 직장폐쇄는 7월 26일 신고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폭력은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므로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끌어냈더라도 SJM의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 “SJM직장폐쇄 이후 조합원 퇴거 과

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와 같은 사용자 편향적인 행정해석을 하지 말 것.

(28)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의 적법 여부 검토

- ▷ 아데카코리아 제2노조는 서울, 완주, 수원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두루 가입하고 있음. 동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완주군청에서 수리한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9)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 고용안정 대책 마련

- ▷ 안양 소재 고객상담센터의 울산 이전으로 소속 전화상담원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30) 첨단산업단지 노동관계법 정착 위한 노력 필요

- ▷ 구미 산업단지를 보면 월 2번만 휴무하는 사업장과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바, 첨단산업단지에서도 노동관계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31) 근로기준법 실효성 강화

- ▷ 최근 4년간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2011년의 경우 점검사업장 중 90.9%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다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32) 임금체불 관련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강구

- ▷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관련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악의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

(33) 포괄임금 남용 등의 문제 개선 위한 대책 마련

- ▷ 사무직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부 서비스 산업 근로자, 포괄임금제도 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대책을 마련할 것.

(34) 정리해고 방지 및 해고자 지원 대책 마련

- ▷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시그네틱스, 흥국생명, 콜트악기 등은 정리해고 당시 재무제표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정리해고 신고 접수 이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고, 위법한 정리해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
- ▷ 정리해고 절차와 정리해고 대상 인원 선정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 대상 선정의 합리성 판단기준을 보고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위

법·부당함이 없게 할 것.

- ▷ 정리해고에 따른 노사갈등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전환배치나 순환무급휴직조치, 사후적으로는 예비비 지원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3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실효성 제고

-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건강보험료도 지원하는 방안,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 근로복지공단 사업수행 인력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고,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근로자 소득을 면밀하게 파악할 것.

(36) 근로자의 적극적 공민권행사 위한 조치 필요

- ▷ 현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공민권행사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공민권행사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조치할 것.

(37) 택시운송업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실태조사 필요

- ▷ 택시운송회사의 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것.

(38) 울산항운노조 관련 갑근세 탈세 및 과다징수 의혹 조사

- ▷ 울산항운노조 조합원의 갑근세 탈세의혹과 울산항 하역회사들의 갑근세 과다징수 의혹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39) 한진중공업 노사합의 이행여부 지속적 점검

-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재취업 관련 노사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노사교섭을 우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중재할 것.

(40)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구조 변경 검토

- ▷ 무기계약직 사무원 등의 인건비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비로 편성되는 구조는 고용 및 임금지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1) 위법한 정리해고 및 재고용 문제 개선 대책 마련

- ▷ 사측이 근로자를 정리해고 및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25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2) 감정노동 산재인정 대책 마련

- ▷ 서비스직 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질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의 산재인정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 및 대책을 강구할 것.

(43) 성희롱 산재인정 대책 마련

- ▷ 성희롱 산재인정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그 특성에 따른 조사 매뉴얼 및 심사체계가 없어 산재인정과정에서 해당 노동자의 2차·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 ▷ 영화현장노동자, 킥서비스노동자 등 저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중소기업사업주방식(임의가입특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45)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등

- ▷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에 관한 노사정 추천 전문가보고서가 제시되었으므로 즉각적인 인정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직업성암의 산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46) 국민노총 국비 지원 집행 결과 점검

- ▷ 국민노총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의 임금 지급과 사무실 계약상황 및 사용용도가 적절한지, 사업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등 보조금 집행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것.

(47)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등

- ▷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조사부의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및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비리로 누수된 산재보험료에 대한 환수방안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의료기관 평가를 철저히 하고, 장애등급 결정시 직영산재병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48) 민간근로자 처우 개선

- ▷ 직업상담원, 사무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낮은 수준이므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49)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변경

-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대법원 판례(2012. 2. 23)와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산업현장의 실태에 부합되도록 변경할 것.

(50) 산재예방 정책의 지표 개선

- ▷ 현재 재해율이 산재예방 정책의 성과목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은폐가 쉽게 이뤄지는 재해율 보다는 은폐가 어려운 사망만인율을 정책의 지표로 삼도록 할 것.

(51)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충원 실시

- ▷ 구미 불산 가스누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1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PSM(공정안전관리제도) 대상으로 하는 변경안’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담당기관들의 유기적인 조직개편 및 큰 폭의 인력충원을 실시할 것.

(52) 기업의 무노조경영 정책 폐기 지도

- ▷ 삼성이 ‘무노조경영’ (‘비노조경영’) 원칙을 폐기할 때까지 지속적인 권고, 계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53)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

- ▷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및 권리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작업현장 내 권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54)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처벌

- ▷ (주)만도 등 사업장에서 벌어진 공격적 직장폐쇄에 관한 조사 및 공격적 직장폐쇄를 전후한 부당노동행위 현황을 감독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취할 것.

(55)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현황’ 작성 사업 개선

- ▷ 복수노조 이후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문제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현황을 고려할 때, 현행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현황’ 조사 및 작성 방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노동조합현황’ 사업 개선방향 및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56)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불법 조합비 징수여부 등 조사 필요

- ▷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이 불법적으로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근로계약 감시업무 등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본부에 대한 감사 중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사항】

(1) 노사발전재단 기관 안정화

- ▷ 노사발전재단은 다수 직원의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충당하고 있고, 전체 직원 중 기간제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고용이 불안한 상태이므로 기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2) 한국잡월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 지난 9월 한국잡월드 공기질 측정 시 청소년 체험관에서 발암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학물의 노출농도가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1차 산업 체험프로그램 검토 및 진로설계관 수용능력 확충

- ▷ 한국잡월드의 경우 1차 산업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방 청소년의 자부심과 공공성 측면을 감안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진로설계관의 수용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직업심리검사를 받기 위해 상당한 대기시간이 소요되는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

(4)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채용 특혜의혹 재조사

- ▷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조사할 것.

(5) 근로복지공단 비리 외부감사 등 감사강화

-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등 공단의 100억원대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공단외부감사로 근로복지공단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화학물질 사용사업장 관리강화

- ▷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공개, 조사기관의 신뢰성·현장성 확보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7)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관리·감독 강화

-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행수수료를 받거나 안전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지정취소실적은 저조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8) 산업안전관련 법령 위반 처벌조치 강화

- ▷ 최근까지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위반에 대한 처벌조치를 강화할 것.

(9) 산업재해통계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제도개선

- ▷ 정부의 각종 연구보고서가 공식적인 산재통계보다 훨씬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산업재해보고·산재신청 및 산업재해 은폐 적발·처벌강화에 대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0) 학교현장근로자 안전보건관리대책 강화

- ▷ 학교급식조리사를 포함한 학교현장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안전보건 관리·감독대책을 마련할 것.
- ▷ 학교 과학실험실, 급식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등 전국 학교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 점검대책을 마련할 것.

(11)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기술직 비율 확대

-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무인원에 화공·전기·기계분야 등 기술직 감독관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업무영역 확대로 재해예방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2)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관리 강화

- ▷ 추락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망 설치 및 정기점검을 강화할 것.

(13) 구미 불산유출사고 예방관리책임 조치 철저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을 사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예방관리체계에서 해당 사업장이 누락되는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관리책임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14) 산재심사에 법원판결 즉각 반영

- ▷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상고 제한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고, 법원판결결과가 다음 산재심사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재심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5)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민간위탁 중단

-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

격법 개정안'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바, 재위탁 검정업무를 원상회복시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토록 할 것.

(16)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조치 철저

-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노조총회 불법도청이 발생하였고, 노조 사무실과 사내인트라넷 폐쇄를 비롯하여 조합간부 70%를 부당전보 발령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으므로, 불법도청과 부당노동행위 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물론 기관장에게도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

(17)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재공공화 필요

- ▷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직업훈련원이 대한상의로 이관되어 생긴 민간훈련기관으로 '94년 이관 이후 공공단체로 지정되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다가 2010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단체에서 제외된 후 대한상의로부터 투자가 거의 없어 훈련기능이 저하되었음.
- ▷ 한편 정부로부터 이관된 시설 등 자산과 정부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으로 위탁하는 훈련비 지원금액의 합계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바, 고용노동부는 대한상의로부터 인력개발원을 분리시켜 재공공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8) 민간인 불법사찰과 노조파괴 연루 인사들의 공직 퇴출

- ▷ 민간인 불법사찰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경남지노위원장과 노조파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중노위 조정심판국장(전 C&G노무법인 대표)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등에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차지한 불법연루 인사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즉시 공직에서 퇴출시킬 것.

(19) 비정규직 근무경력 미 인정 사유 보고 및 개선대책 마련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근무당시의 경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바, 그 이유를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0)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대책 실시 및 정규직 전환 계획 강구

- ▷ 공공부문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인력 비중이 증가하여 '11년 기준으로 30%에 육박하고 있음.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수의계약이 빈번하고, 시중 노임단가 적용 및 용역체결시 고용승계, 고용유지 조항 명시 등 정부의 외주근로자 보호대책의 주요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대책을 즉각 실시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강구할 것.

【6개 지방청 공통사항】

(1) 근로감독관 기강 확립 및 청렴한 노동행정 구축

- ▷ 민간기업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향응·접대를 요구하는 등 일부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행태에 관한 제보들이 있는바, 각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속 근로감독관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노동행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신속한 사건처리

- ▷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할 때 관할 문제로 사건 접수를 미루지 않도록 주의하고, 센터 설치 및 운영·홍보를 활성화할 것.

(2)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 (주)에보트코리아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임. 동 기업을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3)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 SH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스탬뱅크는 허위 근로계약서를 강요해서 실제 근로기간과 계약서에 따른 근무공백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한 위법 혐의가 있으므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4) 금융 관련 노동조합 파업 사태 해결

- ▷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ING 생명 등에서 단체협약 해지, 고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장기간 파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5)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 ▷ 복수노조 하에서 노동조합간 또는 노사간 갈등을 겪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6) 임금체불사건 지도해결 비율 제고

- ▷ 체불임금사건 지도해결 비율이 최근 5년간 지방고용노동청 중 최저 수준이므로 지도해결 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

(7) 채용박람회 내실화 방안 마련

- ▷ 채용박람회 취업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 ▷ 정부지원 종료 후 인턴제 수료인원의 약 50%가 퇴사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바,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9) (주)대한항공 부당노동행위 조사

- ▶ 대한항공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감독권한 행사와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여기는 바, (주)대한항공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독 현황과 이후 계획을 제출할 것.

(10) 재능교육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법 조치

- ▶ 창조컨설팅의 불법 노무컨설팅이 진행된 학습지노동조합 재능지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보고하고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KT의 CP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사 실시

- ▶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CP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본사 뿐 아니라 모든 계열사와 지사를 포함할 것.

(2)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신속한 사건처리

- ▶ 관할 안심알바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 떠넘김에 따라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청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및 운영·홍보를 활성화할 것.

(3) 채용박람회 내실화 대책 마련

- ▷ 강릉지청 채용박람회에서 특정기업에 채용자가 편중되고 강릉지청이 자체적으로 비정규직(통계직)을 채용하는 사례가 나타났음. 이는 채용박람회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예산 투입대비 취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4) 건설업종 재해자 감소 대책 마련

- ▷ 중부청 관할 지역의 총 재해자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재해자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건설업 재해자수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외국인근로자 산재 감소 대책 마련

- ▷ 중부청 관할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근로자가 많고, 외국인근로자 산재율이 10%를 넘고 있으므로 현지어를 사용한 산업안전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산재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 ▷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정규직과의

차별 및 같은 비정규직 간에도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은 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2)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한 대책 강구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검한 연소근로사업장 중 95%(278개)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바, 법위반 사업주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실시와 연소자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3) 직업안정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 ▷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 제시,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 등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므로, 제도 홍보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한진중공업 복직근로자 모니터링

- ▷ 정리해고 후 노사합의에 따라 복직한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지도할 것.

(5) 채용박람회 취업실적 제고방안 마련

- ▷ 채용박람회 취업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업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 경기불황에 따른 정리해고 방지 위한 대책 마련

- ▷ 조선업계를 비롯한 부산경남지역 산업이 불황이어서 경영악화에 따른 대량 정리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 임금체불사건 지도해결비율 제고방안 마련

- ▷ 부산지역 임금체불사건 지도해결비율이 금액기준으로 50.7%인데, 이는 전국 평균이하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해결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용자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방안 강구

- ▷ 부산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청년실업률 평균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자치단체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할 것.
- ▷ 창직인턴제가 부산지역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제도가 부산지역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조치를 시행할 것.

- ▷ 부산지역 사업주 및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연계 대책 시행

- ▷ 부산지역은 타 도시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시행할 것.

(10) 산재은폐 조사 및 처벌 강화

- ▷ 부산·울산·경남지역 노동자 대상 조사에서 80% 이상이 산재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부산지방노동청 관할 사업장에 대한 산재은폐 조사 및 처벌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1) 조선업체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관 사업장 중 조선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재해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그 중 영세업체가 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청업체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할 것.
- ▷ 녹산공단 방사선 노출사고 등 조선업에 종사하는 비파괴검사 노동자의 산재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점검과 고용명령 시행

-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으로 근로감독관이 불법

과건에 대하여 실태점검하고, 고용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정전반을 실태조사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아울러 불법과건 공정에 대해 고용명령을 실시할 것.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불산유출 등 중대재해발생 대응조치 강화

- ▷ 구미 불산유출 사고에서 즉각적인 현장조사, 비상대응, 특별감독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규명할 것.
- ▷ 중대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작업중지권 행사 강화를 비롯한 예방매뉴얼을 마련할 것.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 제시,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 등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므로, 제도 홍보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대구지하철 해고자 복직

- ▷ 2004년 파업으로 해고된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학교도서관 사서 고용안정 방안 마련

- ▷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사서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임. 학교도서관 사서 고용실태를 분석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취지에 맞게 사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5)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 점검 적정화

- ▷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 점검으로 인해 단체교섭과 노사합의가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발보다는 지도 중심의 현장 점검이 되도록 할 것.

(6) 노동조합 탄압 행위 예방 철저

- ▷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사용자 개입에 의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간 혹은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 노동조합 탄압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7) 영남대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 실시

- ▷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은 사용자 개입으로 대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였고, 의료원 측은 단체협약 개악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또는 감독 역할을 할 것.

(8) 임금체불문제 개선 대책 마련

- ▷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현황을 보면 제조업의 임금체불비중이 높고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채용박람회사업 성과 제고방안 강구

- ▷ 민간위탁 채용박람회 사업은 예산 투입대비 취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0) 국제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특성화고교 졸업예정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할 것.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일선 관서에 인력 재배치

- ▷ 광주청 본청의 인력을 지청 또는 고용센터 등 일선 관서로 적절히 재배치하여 업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2)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관리감독 강화

- ▷ 광주청 소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약 25%가 대리출석, 훈련내

용 임의 변경 등의 부정훈련을 실시한 사유로 적발되었는 바, 실업자 훈련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자율 재해예방계획제출 사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 ▷ 캐스코(LS전선 계열사)의 용광로 전복사고 사례로 볼 때, 자율 재해예방계획을 제출한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가 잦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개선확인 절차와는 별도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것.

(4) 타지역보다 높은 산재율에 대한 대책 마련

- ▷ 광주청 관할 사업장의 산재율이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높고, 사망률 또한 2배 이상으로 높아 법령위반 사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현장감독 인력을 증원할 것.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 ▷ 현대제철(당진제철소) 내에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임금, 휴게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가 심각하므로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것.

(2)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고소 또는 고발 등으로 제기한 부당노동

행위 등이 대부분 사실로 판단되므로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3)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사전 예방지도

- ▷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주)에 복수노조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 및 사전 예방 조치할 것.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 ▷ 정부지원 종료 후 인턴제 수료인원의 약 50%가 퇴사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바,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

(5) 서산 아르바이트생 자살사건 관련 직장내 성희롱 방지 대책 마련

-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성희롱 등 사업장 내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이 더욱 필요하다고 봄.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는 식당·PC방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지역사회·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

(6) 방사능피폭근로자 안전대책 마련

- ▷ 원자력연구원 등 대전지역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신고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피폭사고 예방조치, 사후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세종시 등 대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 대규모 건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되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1)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 현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가 경시되고 합의 성과도 부진한 등 노사정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위원회 대리참석 문제 개선

- ▷ 정부 측 위원이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을 대리로 참석하게 하는 비중이 높은 문제를 시정할 것.

(3)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필요

- ▷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관하여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

(4) 비정규직 문제 논의 필요

-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력할 것.

(5) 청년의 목소리 경청 필요

- ▷ 청년 및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논의하는 세대간상생위원회에서 실제 현장의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

(6)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 ▷ 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필요하므로, 업종 및 지역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와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확대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7)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 사실관계에 비추어 근로자임이 분명함에도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이론을 정리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1) 심판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 사건 대리인과 공익위원의 친소관계 등으로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는 의혹이 있으므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 공익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고, 공익위원에게 미리 대리인 및 당사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판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2) 조사관 사건 배정 방식 개선

- ▷ 현재와 같이 접수사건을 순번제로 배정하는 경우 특정 조사관에게 특정 사건이 인위적으로 집중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기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

(3) 법정기한 내 심문회의 개최 철저

- ▷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 부터 6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한 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건이 많음. 법정 기한 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부당노동행위 조사방식 개선

- ▷ 부당노동행위 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 ▷ 2012년 8월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별시정 신청기한도 연장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음. 이러한 제

도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창조컨설팅 관련 사건 재조사

- ▷ 창조컨설팅이 대리인으로 참여했거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것.

(7) 단일노조임이 확실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불필요

- ▷ 2012년 7월 충북지노위가 명백하게 단일노조가 확실하며 또한 사측의 귀책사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콘티넨탈노조를 조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부의 행정지도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명백한 단일노조의 경우 교섭창구화가 불필요함”을 중노위에서 각 지노위에 지침을 내려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없도록 조치할 것.

(8) 조정·판정 업무의 공정성 제고

- ▷ 타임오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심판은 거의 100%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측 과실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유일한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 부적격’ 행정지도를 남발하기도 함으로써 헌법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걸맞게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

(9)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 ▷ 이행강제금제도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강제이행금 개선방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위반시 형사처벌 부활, 이행강제금 혹은 벌금부과 방식 개선 등에 관한 정책건의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

(1) 위원구성 다양화 및 임금 범위 조정

- ▷ 소상공인과 소기업연합회, 청년대표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 위원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노사단체와 논의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산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최저임금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10개 소속 공공기관 공통사항】

(1) 직원 정년차별 철폐

- ▷ 직원의 직급 및 직종별 정년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할 것.

▶ 근로복지공단 ◀

(1) 임대아파트 사무실 용도 변경

- ▷ 임대아파트 관리위탁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근우회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무실을 입주자들이 자치공간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직장어린이집 공단 직접운영 확대, 과도한 영리행위 금지

- ▷ 공단은 어린이집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직장어린이집 직접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므로 직장어린이집을 매개로 과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바, 수탁업체가 과도한 영리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3)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정수급조사활동 시정

- ▷ 부정수급조사활동이 동영상 촬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행정편의주의적인 산재보험처리 시정

- ▷ 공단의 잘못으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장기간이 지난 후에 저소득 산재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공단이 부담하도록 할 것.

- ▷ 산재승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를 받을 때는 사업주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장해등급의 심사 및 고지는 해당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유를 공지할 것.

(5) 의사의 오진 또는 과잉진료에 따른 치료의 산재인정

- ▷ 의사의 오진 또는 과잉진료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도 의료사고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고,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진료제한, 지정의료기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 인력부족문제 해결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대책 마련

- ▷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 직원 중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바, 이들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7)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위한 운영지원 방안 마련

- ▷ 2011년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577개소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37%인 213개소에 불과한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 많은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8) 적극적인 산재인정으로 근로자 부담 완화

- ▷ 최근 뇌심혈관계질환 등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산재인정으로 근로자의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인정 기간단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9) 삼성백혈병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대책 마련

- ▷ 삼성백혈병 21건을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했고, 자문의사들의 불승인 의견은 원인 및 인과관계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유해물질 공개 및 관련 전문가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0) 과로사 인정기준 개선

- ▷ 일상적 업무에 비해서 더 장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과로사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상적인 장시간근무에 대해서는 과로사로 인정되도록 할 것.

(11) 직업성암 인정기준 개선

- ▷ 직업병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것.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

- ▷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산재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사회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직렬개편(능력개발직 신설) 재검토

- ▷ 능력개발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직렬개편은 직렬간 갈등과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 등이 우려되고, 직렬통합이라는 추세에도 역행하므로 직렬신설을 재검토 할 것.

(2) 해외취업 연수기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계 규정 보완

- ▷ 출결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비를 받은 해외취업 연수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보완할 것.

(3) 해외취업 연수기관 선정기준 강화

- ▷ 해외 취업자의 단기 고용문제를 개선하여 정부투자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 선정기준을 강화토록 할 것.

(4)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사후관리 강화

- ▷ 아카데미 과정 수료자 중 미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부적절한 산업안전방송광고 시정

- ▶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광고가 산업재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산재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제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 노·사 자율위험관리에 따른 사업장 위험관리방식 재검토

- ▶ 구미공단 등 공단지역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가 협소한 상황에서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위험관리시스템이 노·사 자율위험관리로 전환되는 것은 규제의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폐기하고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적정지원 대책 마련

- ▶ 전동지게차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전·사후감독시스템을 철저히 개선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보조금을 조속히 환수할 것.

(4) 사고성재해기술지원의 재해예방 효과성 강화

- ▶ 사고성재해기술지원이 비전공인력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재해예방 효과가 크지 못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휴브글로벌 불산유출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으므로, 관련 사업계획이나 지침의 면밀한 검토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 고소작업대 안전검사규정 마련

- ▷ 추락사고가 많은 고소작업대의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구동에 고소작업대를 포함시키도록 할 것.

(6)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강화

- ▷ 업종이 다양하고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업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업종별 사업주교육, 근로자직무교육에 안전보건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 개선 방안 마련

- ▷ 시중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관보 이외에 사회적 파급력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매체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이는 등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2)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 ▷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공단에서 민간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 능력에 있어서 출결관리 부정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관할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4)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

- ▷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5)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 장애인공단은 2012년부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면서 정부기관인 공단이 민간위탁사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면 고용센터나 공단의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탁방식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장애특성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 중증장애인이거나 정신적장애인은 장애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나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이들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7)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차별적 요소 제거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은 지방대회 1위부터 3위까지인 반면, 장애인공단이 개최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은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1위에게만 참가 자격을 주고 있어 참가자격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임. 또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에 대한 혜택, 상금 등에 있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차별적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

(8) 근로지원인 서비스 관련 개선대책 마련

-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기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근로지원인 임금 수준이 매우 낮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근로지원인의 선발, 근무환경, 관리, 교육 등 근로지원인과 관련된 사항을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음에 따라 수행기관이 업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월 100시간 제공되고 있으나 종종 장애인이 주 5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실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제약되므로 서비스 시간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워크투게더 센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 ▷ 개별적인 고용,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인 워크투게더 센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1) 인사규정 및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조치 실시

- ▷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인사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고 감사부서 직원의 전보가 원칙 없이 잦은 문제가 있는바,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 조치를 실시할 것.

(2)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대책 마련

- ▷ 직원 중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들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위탁위주의 사업추진방식 개선

- ▷ 진흥원의 설립취지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위탁사업의 비중을 축소토록 노력할 것.

(2)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 개선

- ▷ 사회적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및 진흥원으로 분리되어 있어 상호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축적된 DB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3)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 ▷ 공공기관 등으로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개인성과 평가 개선방안 검토

- ▷ 국책대학 교직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성과 평가에 피징계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임용규정 개선을 통한 내부직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

- ▷ 내부 교직원들이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될 기회가 적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내부 교직원이 확대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고용노동연수원의 “대국민 노동교육서비스 강화” 기능 회복 검토

- ▷ 청소년 등 예비근로자에 대한 기초노동교육을 강화하고 노동교육의 공공성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연수원의 “대국민 노동교육서비스 강화”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노사발전재단 ◀

(1) 기관 안정화 필요

- ▷ 재단 직원 중 기간제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1년 단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여 고용불안 상태가 심각하므로 재단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임원의 적기 인선

- ▷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자가 적기에 인선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후보자 선발 등에 유의할 것.

(3)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권한 강화

- ▷ 차별예방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터지원단이 사업장에 대해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 근거를 마련하거나 근로감독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1) 지하철 승강기 안전점검 강화

- ▷ 서울시내 지하철 승강기 고장 및 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승강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2) 승강기 안전기술원 노조탄압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 ▷ 김윤배 이사장 부임이후 사측이 노조 총회를 도청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조치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방안을 마련할 것.

3) 기상청 소관

【기상 예보 관련 사항】

(1) 민간 협력을 통한 기상 예보 방안 마련

- ▷ 삼성화재 기후예측 보고서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기상청의 대응이 경직적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간과 협조하여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
- ▷ 민간 기상사업자의 예보가 더 정확한 경우가 있고, 케이웨더나 삼성화재의 보고서 내용이 기상청 예보보다 정확한 측면도 있었는바, 민간예보에 과잉대응을 하지 말고 민간기상사업자와 예보결과를 같이 발표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2012년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기상청 예보시스템에 가뭄을 포함하여 가뭄 예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뭄 연구 등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 ▷ 기상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하여 기상서비스 산업에 대한 R&D지원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민간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기상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기상예보 업무의 특별한 교육 및 인사관리, 처우개선 필요

- ▷ 예보업무를 기피하여 전문인력의 부족한 것은 인사관리시스템상 문제라 보이는데, 핵심업무인 만큼 예보 분야에 대한 특별한 교육 및 인사관리를 실시할 것.

- ▷ 예보관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순환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예보업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
- ▷ 위험기상분석관이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정식 조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

(3) 국가 수문기상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의 중복성 해소

- ▷ 국가 수문기상예측시스템 구축 사업과 시범지역 수문기상 기술개발 연구사업, 수문기상기술개발 사업, 환경부의 수질예보제 간의 중복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고할 것.

(4) 이안류 예보 및 정보제공의 중복 조정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 이안류의 예보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위험단계 및 정보내용에도 차이가 있고, 일정 지역에서만 관측되며 예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피해 확대가 우려되므로, 이안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이안류 예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타 지역에 대한 관측시스템을 구축할 것.

(5) 태풍 블라벤 경로 예측 관련

- ▷ 기상청의 기상예보과정에서 기상예보를 누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측시 누락하지 않도록 할 것.
- ▷ 대통령 방문 시 보고한 태풍경로가 실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 불라벤과 덴빈에 대한 예측이 차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태풍분석 및 예측기술을 보다 향상시켜 신뢰성 있는 정보 생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6) 가뭄조기경보시스템 추진 필요

- ▷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상청 역할이 중요하므로, 실제 예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수량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가뭄지수를 보완하고 기상청이 관계기관을 총괄하는 전달체계 구축 및 가뭄조기경보시스템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등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7) 독자적 수치예보 시스템 개발 및 기상예보 정확성 확보

- ▷ 영국 모델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독자적 수치예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예산확보와 연구인력을 좀더 확보하여 조속히 이를 개발할 것.
- ▷ 기상청의 독자수치예보모델 완성 이전까지 예보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확대하고, 관측장비 설치 지역을 늘리며, 북한 등의 기상정보도 확보할 것.

(8) 장기예보 정확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장기예보 정확도가 40%에 불과하여 방재기관 및 산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9) 우주기상서비스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

- ▷ 우주기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방통위와 협의과정에서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우주기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 공조를 확보할 것.

(10) 풍랑주의보 기준 현실화

- ▷ 풍랑주의보 기준 마련 이후 많은 기간이 경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준을 현실화할 것.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기상장비 국산화 노력

- ▷ 기상산업의 시장규모가 작으므로, 국산화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R&D 예산 비중을 확대하도록 할 것.

(2) 자동기상관측장비 운영개선 대책 필요

- ▷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도시화의 영향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장소에 이전 설치하고, 운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기상청 장비 입찰 비리의혹 관련 철저 조사 필요

- ▷ 기상청 장비 입찰 관련 장비의 관측가능거리 기준을 낮추는 등 기상청장이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 등 철저히 점검하고, 사실이 밝혀지면 기상청장이 용퇴할 것.
- ▷ 기상라이다 입찰 비리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아닌 오히려 진흥원의 구매팀장이 내통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 웨더링크의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담당자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생각되는바, 불법적인 조치를 취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 이러한 비리는 쌍방독점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리로 보이는데, 해결을 위해서 국산화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상청의 맨파워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배양하며 인력을 양성할 것.
- ▷ 기상청은 진흙탕싸움으로 변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것.

(4) 기상청 발주 사업의 소수업체 독식 방지 대책 및 예산절감 노력 필요

- ▷ 기상청 및 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발주현황을 보면, 10개 특정업체의 수주율이 매우 높아 기상산업의 다변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찰요건을 적절하게 검토할 것.
- ▷ 라이더 사업 예산과 낙찰결과를 보면, 예산의 62.5% 수준으로 낙찰되고 있어 예산이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 업체의 가격확인과 자료첨부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독려할 것.

(5) 독도 무인관측소의 중단 재발 방지

- ▷ 독도 무인관측소가 전력난으로 중단된바 있는데, 이는 전력수요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사전 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6) 해양기상부이 고장 방지

- ▷ 해양기상부이가 잦은 고장과 긴 복구기간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것.

(7) 기상산업진흥원 장비유지 보수 업무 철저

-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기상장비의 하자 발생이 과다하고, 하자 보수가 지연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유지보

수 업체와 구입 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것.

(8) 기상사업자 관리 실태 부실

- ▷ 기상청의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이 미흡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칙 또한 수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

(9) 기상관측장비 고장 과다

- ▷ 기상관측장비의 고장과 그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기상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고장원인 및 시간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10) 윈드프로파일러의 검수방법 마련

- ▷ 윈드프로파일러는 국내 도입이 한번도 된 적이 없는바, 시설의 납품시 검수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인사, 인력 및 조직 관련 관련 사항】

(1) 지진 관련 조직확보 및 투자 확대

- ▷ 지진 등과 관련하여 전담연구원이 4명에 불과한 등 예산과 조직이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투자와 조직확보 등 보강을 실시할 것.

(2) 기상청 인력의 해양과학원 파견 및 기상관측소의 확대·강화

- ▷ 기상청의 장비와 인력을 해양과학원에 파견하여 기상관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어도의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상관측소를 확대·강화할 것.

(3) 국가태풍센터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

- ▷ 국가태풍센터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상청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실현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4) 기상조절, 인공강우 실험의 실용화 필요

- ▷ 기상조절, 인공강우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을 확보하여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기상선진국 도약 필요

- ▷ 인력, 인프라, 장비 등이 부족하여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것.

(6) 지역기상담당관제 제도적 근거 마련

- ▷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를 통하여 지역의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근

거를 마련하도록 할 것.

(7) 산하기관 성추행 및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 ▷ 기상청 고위공무원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기상청의 산하기관으로부터 인력 차출 행태를 근절하고, 여직원의 신변보호 및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강확립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자급의 교육을 통하여 이를 근절할 것.

(8) 검찰 및 경찰의 비위 통보에 대한 기상청의 처벌 미약

- ▷ 검찰 및 경찰의 범죄사실 기관통보 현황 및 내부징계현황을 보면, 비위통보 수도 많은 편이지만, 통보된 후 기상청의 징계 내용이 솜방망이 수준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사 조치와 감사 기능의 정상화 등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9) 대구기상대 및 울산 기상대 이전 관련 점검 필요

- ▷ 대구기상대의 경우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지이전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한 측면이 있고, 울산기상대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계획을 보류하는 것을 검토할 것.

(10) 제주혁신도시 이전 관련 대책 필요

- ▷ 국립기상연구소의 제주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하지 않겠다는 연구원이 절반이상이며 이전 후 지역과의 협력 및 특성화 전략도 부재한 상황이므로 인력 보충 및 이전하는 직원 지원 방안, 지역 특성화 전략 등을 마련할 것.

【기상정보 접근성 관련 사항】

(1)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개선

- ▷ 웹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립기상연구소가 최하위로 기록되었는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2) 기상청 모바일 앱 개선

- ▷ 기상청의 모바일 앱에 대한 이용도와 호응도가 높은 편이나 위젯 기능이 없어 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3)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정보 전파 노력 증진

- ▷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정보 전파가 미흡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농어촌지역 등 기후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우선시할 것.

(4)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철저

- ▷ 기상청 홈페이지 내 지식샘이나 날씨공감 등의 콘텐츠 운영과정에서 좀더 국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인력 확보 등의 노력을 병행할 것.

【기타 기상청 관련 지적사항】

(1) 후속위성 지상국 개발 예산 반영 노력 필요

- ▷ 후속위성의 지상국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예산 반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남북 기상 협력에 신중

- ▷ 참여정부 시절 설치한 기상 및 황사관측장비의 관측 자료를 2008년 6월 이후 받지 못하고 있어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남북 기상협력 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할 것.

(3) 민간 기상산업 육성 전략 재검토

- ▷ R&D의 경우 특정 7개 대학에 연구비가 집중되는 등 민간기상산업 육성 전략의 내용이 부실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의 역할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민간부문 확대의 바람직성에 대하여 공공성 강화방향에서 신중하게 점검할 것.

- ▷ 기상산업진흥원 설립 이후 성과에 비하여 조직이 비대해졌는데, 이는 방만한 조직편성으로 보이므로, 설립취지에 맞게 국내 기업의 장비를 구매하는 등 적절한 역할의 수행방안을 모색할 것.

(4)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정 포함 노력 필요

- ▷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된 예산, 사업계획, 인력 확장 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기상청 주도로 교과과정에 기후변화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기상청의 철학을 고민할 것.

(5) 백두산 화산 분화 관련 대책 마련

- ▷ 백두산 화산분화 시나리오를 통하여 피해발생여부 및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하며, 타 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 백두산 화산분화 시나리오에 대하여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장비를 지원해서 북한과 공동으로 연구 및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슈퍼컴 2호기의 적합한 사용방안 마련

- ▷ 슈퍼컴 2호기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안 등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구미 불산사고 관련 신속한 대응과 발생가능한 재해 대처를 위한 체계 구축

- ▷ 구미 불산사고 관련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사고 대응에 늦게 합류한 측면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기류분석 정보의 전달 등을 위한 매뉴얼을 확보하고, 방사능 누출 등 원전안전과 관련해서도 대응매뉴얼과 타 부처와의 네트워크를 마련할 것.
- ▷ 구미 불산사고와 관련하여 소규모 기상 연구 시 강수량, 풍향, 습도, 풍속 뿐 아니라 기압형성도를 추가한 동네예보 자료가 중요하므로, 동네 예보를 보완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의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하여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시 확산 예상지역 분석과 확산방향 예측을 통해 피해 축소와 사고의 확산을 방지할 것.
- ▷ 기상청 직원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기상청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할 것.
- ▷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에도 기상청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바 있는데, 불산가스 유출과 관련해서도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바,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에만 신경쓰지 않도록 할 것.
- ▷ 현장에서 정확한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할 것.
- ▷ 지역의 기상전문가가 파견나가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불산가스 확산 예상 지역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전파할 것.

(8) R&D 사업단 연구실적 관련

▷ R&D 사업단의 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연구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9) 언론 홍보에 치우친 기상청 업무보고서

▷ 기상청 업무보고서에 언론보도 내용을 과다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는 언론보도를 업무보고서에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업무보고서에는 보다 내실있는 보고내용을 기재할 것.

4) 서울특별시 소관

【환경 분야】

(1) 수도권매립지 관련 지적사항

- ▷ 수도권 2매립지가 2016년에 완료 예정인데, 3매립장 조성 관련 인천, 경기, 서울시 3개 시·도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바, 문제해결을 위하여 조속히 논의할 것.
- ▷ 불법폐기물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천시민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며, 현재 매립지 주변 인구 증가 상황으로 주거지역 악취 뿐만 아니라 트럭 먼지, 난폭운전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2016년 이후 매립할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고, 경인 아라뱃길 부지대금 전체를 인천시에 지원할 것.
- ▷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준법감시 논란은 언제든 지 되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 저조 대책 마련

-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 30%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3)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실효성 확보 필요

- ▷ 위반차량 단속기준이 5-25도씨 미만 10분 공회전 가능으로, 계절,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는바,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단속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전용극장도 제한대상에 포함시킬 것.
- ▷ ‘자동차 공회전 위반차량 단속관리 지침’은 2003년에 만들어진 것인바, 현재의 자동차 현실과 맞게 개정하고, 공회전 제한장소 점검을 확대할 것.

(4)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강화

-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2011년도 12%가 부유세균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비산먼지 단속 강화 필요

- ▷ 강서구 관내 업체의 60%가 관련법을 위반하였는데 처벌 수위가 낮은 문제가 있는바, 업체 이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6) 경인전철 지하화 계획 마련

- ▷ 현재 지상에 철도가 놓여있어 소음과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인전철지하화가 필요한데 경인전철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서울

시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여 경인전철지하화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7)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필요

- ▷ 서울시는 폐기물 재활용률이 높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나 실제로 폐기물 재활용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률 제고에 힘쓸 것.

(8) 건축 설계 시부터 에너지 전문가 참여 필요

- ▷ 건축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효율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바,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한강 텃밭 사업 환경오염 우려

- ▷ 국토해양부 반대로 한강텃밭 사업이 노들섬으로 변경되었는데, 노들섬 역시 수변구역으로 자체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비료 등으로 인하여 한강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바, 대책을 강구할 것.

(10) 에너지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 에너지 감축을 위해서는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바, ‘에너지 감축 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에너지 감축을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며, 서울시 정책 전반에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시스템을 전환할 것.

(11) 용산 미군기지 관련 적극 대응 필요

- ▷ 용산미군기지 관련 유류유출사고 정화작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캠프킴 주변지역도 기준치 초과 원인을 규명할 것.

(12) 한강 수계 무단 방류 관련 감시 대책 마련

- ▷ 남양주시 화도 정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 배출처럼 지자체 시설도 무단방류의 가능성이 있으나 예산이나 인력 등 문제로 감시가 어려울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물이용부담금 제도 지자체간 협력 필요

- ▷ 서울시 등 5개 지자체가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지자체간 갈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자체간에 협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

(14) 터널 내 공기질 관련 대책 마련

- ▷ 터널 내 공기 질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벤조피렌의 농도가 높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배출자들이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을 50% 수준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

(16)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율 저조

-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른 수혜대상은 생계형 서민과 더불어 대기오염에 민감한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이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율이 예산대비 33%, 대수기준 36%로 타 도시에 비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 녹조발생과 관련 시장의 처사 부적절

- ▷ 녹조현상과 4대강사업에 대한 인터뷰 관련, 녹조는 4대강 사업이 전에도 발생하였고,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발언으로 괴담을 조성하여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사인바, 주의하고 녹조발생억제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18)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책 마련

- ▷ 기후변화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재해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수해안전망’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시 적정성, 타당성을 지적받았는바, 대심도빗물저류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대비 준비 철저

- ▷ 과잉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울은 세계 21개 도시 중 가장 밝은 도시로 강남은 기준 대비 5배

나 높은 도시인바, 2013년 2월부터 시행될 관련 법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

- ▷ 공공조명 밝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형전광판의 무분별한 허용은 시각공해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므로 시내 전광판을 먼저 규제하고, 빛공해 문제도 표준화나 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홍보, 교육 등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것.

(20) 한강 수중보 철거 신중한 검토 필요

- ▷ 한강 수중보 철거시 지반 침하변형 및 제방, 교각, 호안시설 등 하부노출로 인한 하천경관이 훼손되는 부분과 하천시설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중보를 철거할 경우 수질변화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

(21) 월계동 방사능 폐아스팔트 관련 역학조사 계획 수립

- ▷ 월계동 주민 1천명에 대한 장기 역학조사 관련 예산확보 등 계획을 수립하고, 폐아스팔트 철거 시공 인부들에 대한 명단 파악 및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

(22) 빗물관리시스템 제도 개선 필요

- ▷ 대심도 건설을 강남역을 비롯한 상습침수지역 6곳에서 신월동 11곳에만 건설하기로 변경하였는데, 강남역, 한강로, 길동, 사당역 등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침수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재검토할 것.

(23) 빗물세 도입 신중할 필요

- ▷ 빗물세 도입을 위하여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빗물세는 환경부담금으로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설계하고, 침수예방 뿐만 아니라 도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리해야 하는 것임에도 예산이 없다고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빗물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

(24)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관련 대책 마련

- ▷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대책이 시급한데, 물재생센터 시설개조 등 구체적 계획은 미수립 상태인바, 음폐수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25) 환경보건 행정 강화 필요

- ▷ 보육·장애인·노인요양보호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미세먼지·라돈문제 등 환경보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환경보건 기능을 확대·강화할 것.

(26) 약수터 수질 관리방안 마련

- ▷ 서울시 약수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음용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실질적인 약수터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7)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 ▷ 빗물이용시설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된 비용을 반환받는 등 운영되지 않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8) 강서 방화동 치현터널 사업추진 부실

- ▷ 강서 방화동 치현터널이 8년 동안 공사 중에 있어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바 치현터널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

(29) 마곡지구 내 호수공원 개발계획 유지 필요

- ▷ 마곡지구 내 호수공원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
- ▷ 마곡지구 내 호수공원 조성은 당초 개발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변경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

(30) 환경기초시설 안전 관리 미흡

- ▷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시설이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31) 음식물 쓰레기 처리 노력 필요

- ▷ 서울시가 1인당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큰 종량제를 실시하는 곳이 지금 금천구 하나뿐으로,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보이는바,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 축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32) 청계천 자연화 추진 관련

- ▷ 2005년 청계천 건설 당시 미흡했던 역사·문화, 생태·환경 등에 대하여 개선하고 지천 수질개선과 오수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

【고용 노동 분야】

(1) 간접 고용된 근로자 처우 개선

- ▷ 서울시립대와 서울지하철공사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서울시가 이들의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 심야노동과 시간외 수당 미지급, 모성보호시설 부족 등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2) 서울시 공기업의 정년연장 노력

- ▷ 타 자치단체 공기업과 달리 서울시 공기업만 정년을 58세로 유지하고 있는데,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을 할 것.

(3)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 향상

- ▷ 타 시도에 비해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수가 많은 편이나 중앙정부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여성간부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승진목표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서울대공원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

- ▷ 서울대공원 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사적노동, 무리한 작업 지시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서울도시철도공사 산재예방조치 강화

- ▷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심야노동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계획을 마련하고, 철도노동자 암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8. 감사원 감사요구사항

감사대상 기관	감사요구 사항	위원회 의결
환경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관련 입찰담합 의혹	제313회(임시회) 제1차(2013.2.13.)
환경부 등 관계기관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의 사전관리와 사후 대응 부실 문제	제313회(임시회) 제1차(2013.2.13.)

9. 증인고발 사항

출석 요구일	이름	직책	불출석 사유	위원회 의결	비고
10. 8(월) 10. 22(월)	김재철	MBC 사장	해외 출장	제311회(정기회) 제15차(2012.11.26.)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 MBC 장기파업관련 특별회의(11. 2.), MBC 장기파업관련 청문회(11. 12.) 불출석 및 서류제출거부 포함 고발

※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모욕의 죄」에 관하여는 불기소 처분